


정책분석 11-02

주요국 재정건전화 방안

2011. 3

 재정분석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은경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임현정 (미 국)
김윤지 (캐나다)
이성호 (일 본)
진명은·이은희 (프랑스)
이수연·김정원 (독 일)
권나현 (영 국)
김은정 (호 주)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1
2. 각국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12
<총 론>	12
I. 미 국	17
1. 재정추이	17
2. 재정건전화 방안	19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21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23
II. 캐 나 다	26
1. 재정추이	26
2. 재정건전화 방안	31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32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34
III. 일 본	37
1. 재정추이	37
2. 재정건전화 방안	41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48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50
IV. 프랑스	55
1. 재정추이	55
2. 재정건전화 방안	58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62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65
V. 독 일	69
1. 재정추이	69
2. 재정건전화 방안	72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74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79
VI. 영 국	84
1. 재정추이	84
2. 재정건전화 방안	85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86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89
VII. 호 주	95
1. 재정추이	95

2. 재정건전화 방안	96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97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100

표목차

<표 I-1> FY2012 예산안의 주요 세입증대 방안	22
<표 I-2> FY2012 예산안의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24
<표 II-1> 과거 10년간 캐나다정부 재정추이	27
<표 II-2> 캐나다 재정전망(2010년 10월 현재)	28
<표 II-3> 세입전망	33
<표 II-4> Budget 2010의 지출삭감 계획	34
<표 II-5> 프로그램지출 전망	35
<표 III-1> 중앙 및 지방정부 국가채무 잔고 추이	39
<표 III-2> 단계별 재정건전화 목표	43
<표 III-3> 「재정운영전략」의 재정건전화 목표	45
<표 III-4> 「재정운영전략」상 재정운영의 5대 원칙	45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46
<표 III-6>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49
<표 III-7> 2011~2013년도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 ..	51
<표 IV-1> 프랑스 FY2007-14 재정지표	56
<표 IV-2> FY 2010-2011 미션별 지출 상한	60
<표 IV-3> 세수증대 방안 주요 내용	63
<표 IV-4> 연금재정 관련 주요 세제개편 내용	64
<표 IV-5> 재정건전화 목표	65
<표 IV-6> 예산상 지출축소 방안 주요 내용	66
<표 IV-7> 사회보장(의료) 지출전망	67

<표 V-1>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69
<표 V-2> 독일정부 총부채 추이	70
<표 V-3> 독일 및 OECD 국가들의 재정개선 필요	72
<표 V-4> 재정건전화계획의 개요: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액 추이	77
<표 V-5> 중기재정계획상 적자감축내역	78
<표 V-6>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 세입 측면	79
<표 V-7> 중기재정계획(2010~2014)	82
<표 V-8> 중기재정계획상 적자감축내역	83
<표 V-9>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 세출 측면	83
<표 VII-1>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개정 계획	101
<표 VII-2>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 증가율 전망 ...	101
<표 VII-3> 연방정부의 복구예산 추산 내역	104
<표 VII-4> 수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 조달 계획	105

그림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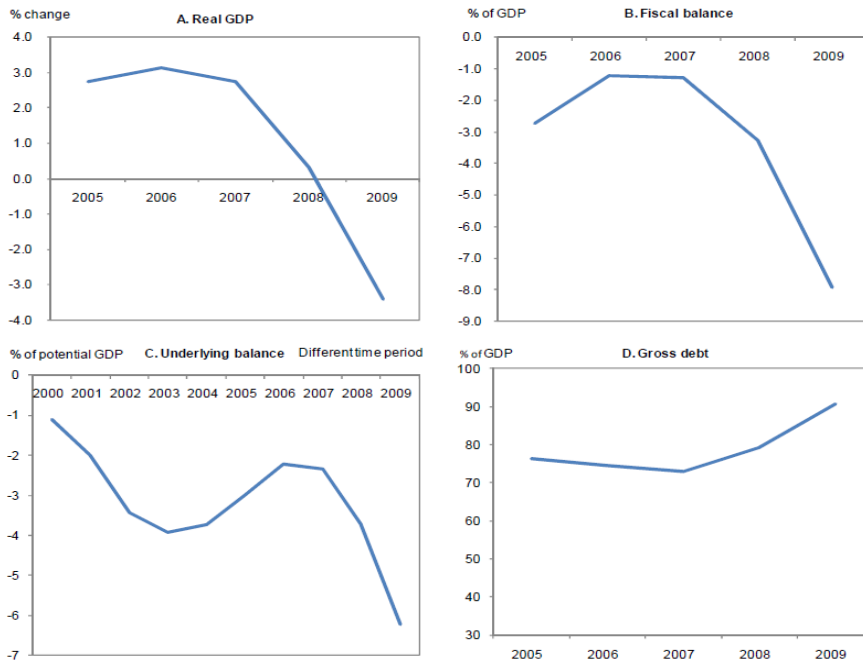
[그림 1] OECD 국가들의 주요 경제 변수들	1
[그림 2] 2025년까지 부채 축소/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화 정도	2
[그림 3]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변화 전망 (2010~25년 사이 변화)	3
[그림 4] 재정건전화 정책 수단: 지출 기반 vs 수입 기반	4
[그림 5] 일반정부 지출의 구조(2008)	6
[그림 6] 주요 프로그램 지출 삭감 정책(빈도)	7
[그림 7] 복지 지출 삭감 규모	8
[그림 8] 의료 및 연금 지출 삭감 규모	9
[그림 9] 연금수령을 위한 정년 연령 변화	9
[그림 10] 수입증가 정책(빈도)	10
[그림 I-1] 미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추이	17
[그림 I-2] 미 연방정부 부채 구성비 추이	19
[그림 I-3]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 재정적자 절반 감축 목표	20
[그림 II-1] 캐나다 재정수지 추이	26
[그림 II-2] 캐나다 정부부채 추이	27
[그림 II-3] 캐나다 전체정부 재정수지 및 GDP 대비 부채비율	29
[그림 II-4] 정부 재정수지 전망	29

[그림 Ⅲ-1] 일본 재정수지 및 요인분해 추이	38
[그림 Ⅲ-2] 국가채무 증가요인(세출 측면)	39
[그림 Ⅲ-3] 국가채무 증가요인(세입 측면)	40
[그림 Ⅲ-4]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 추이와 비교	41
[그림 Ⅳ-1] 프랑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57
[그림 Ⅳ-2] 경기변동과 수입지출 패턴 추이	59
[그림 Ⅴ-1]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추이(전망치 포함) ...	70
[그림 Ⅴ-2] 독일정부 총부채 추이(전망치 포함)	71
[그림 Ⅵ-1] 영국 재정추이 및 전망	84
[그림 Ⅶ-1] 예산수지 및 순채무 추이 및 전망	95

1.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¹⁾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가들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재정이 악화, 향후 고령화 등 재정위험 요소까지 고려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OECD 국가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7.9%이고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정수지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가 부채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국가부채를 안정화(GDP 대비 60% 수준 혹은 위기 이전 수준) 시키려면 상당한 양의 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함

[그림 1] OECD 국가들의 주요 경제 변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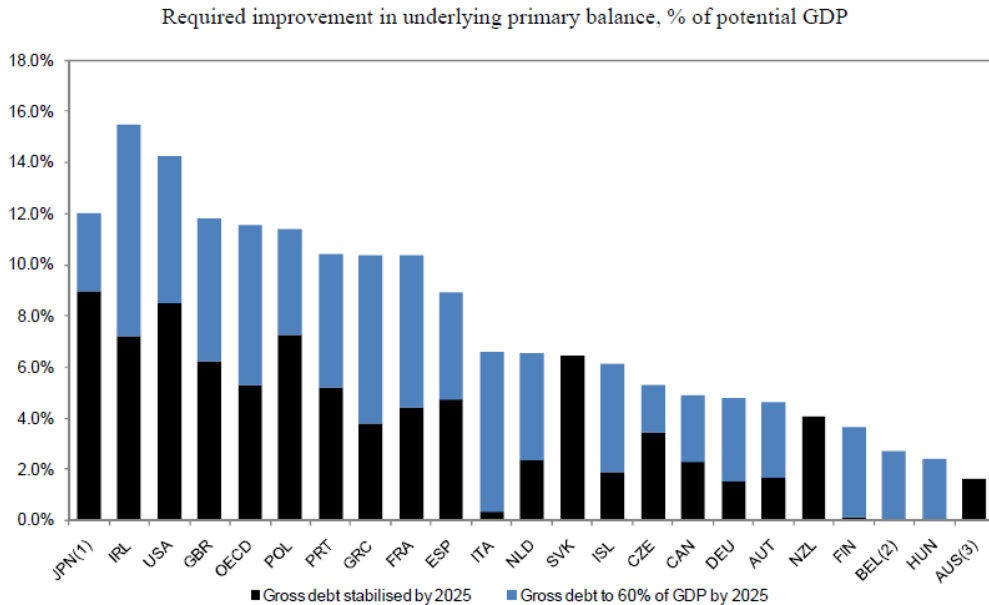
Notes: Fiscal balance and gross debt are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and gross financial liabilities in per cent of nominal GDP. The underlying balance is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adjusted for the cycle and one-offs as a per cent of potential GDP. They are weighted averages.

Source: OECD (2010), "OECD Economic Outlook 88",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doi: 10.1787/data-00533-en.

1) OECD, "Restoring Public Finances," Working Party of Senior Budget Officials (2011년 3월)

[그림 2] 2025년까지 부채 축소/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화 정도

Figure 1.2. Substantial consolidation required to stabilise or reduce debt by 2025



Notes: The figure shows the total consolidation required to achieve a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to-GDP ratio equal to 60% of GDP by 2025 and the consolidation required in 2025 to stabilise debt-to-GDP. For the Slovak Republic and New Zealand, the total consolidation required to achieve a gross debt to 60% of GDP by 2025 is almost the same level as the total consolidation required to stabilise a gross debt by 2025.

1. The required consolidation for Japan is to achieve a pre-crisis (2007) debt-to-GDP ratio by 2025.
2. No consolidation is needed to stabilise the debt-to-GDP ratio by 2025 in Belgium.
3. No consolidation is needed to achieve the 60% debt-to-GDP ratio by 2025 in Australia.

Source: OECD (2010), *OECD Economic Outlook*, Vol. 2010/2, OECD Publishing, Paris, doi: 10.1787/eco_outlook-v2010-2-en.

○ 또한 고령화라는 미래 재정위험 요인까지 고려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

□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 2013년까지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정책 수립

○ 단기적으로는(2011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수립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적음

- OECD 국가의 절반만이 2012년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수단을 발표하였고, 8개 국가만이 2014년까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음

[그림 3]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변화 전망 (2010~25년 사이 변화)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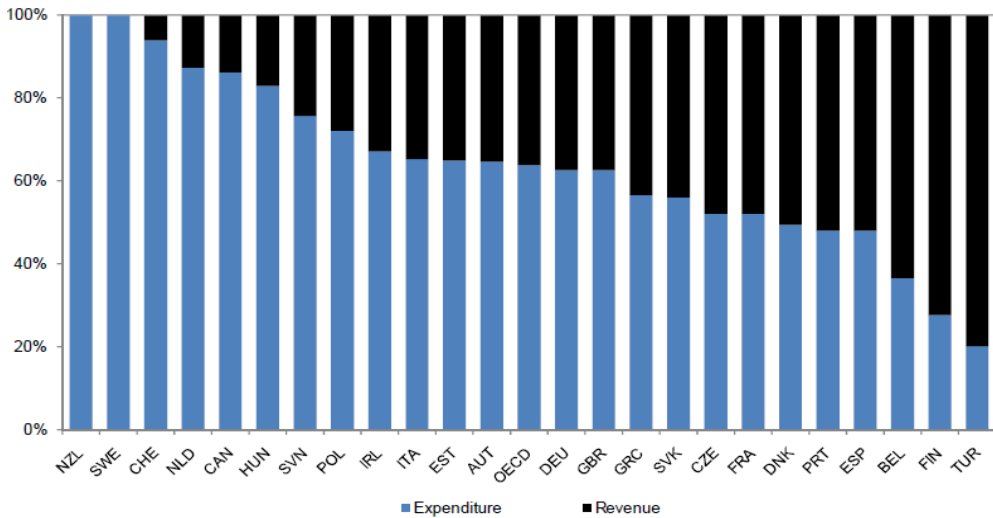
	Health care	Long-term care	Pensions	Total
Australia	0.5	0.4	0.3	1.2
Austria	1.2	0.4	0.7	2.3
Belgium	1.0	0.4	2.7	4.1
Canada	1.4	0.5	0.6	2.5
Finland	1.3	0.6	2.7	4.6
France	1.1	0.3	0.4	1.8
Germany	1.1	0.6	0.8	2.5
Greece	1.2	1.0	3.2	5.4
Ireland	1.2	1.1	1.5	3.9
Italy	1.2	1.0	0.3	2.5
Japan	1.5	1.2	0.2	2.9
Luxembourg	1.0	0.9	3.5	5.5
Netherlands	1.3	0.5	1.9	3.7
New Zealand	1.4	0.5	2.4	4.2
Portugal	1.2	0.5	0.7	2.4
Spain	1.2	0.8	1.2	3.2
Sweden	1.1	0.2	-0.2	1.1
United Kingdom	1.1	0.5	0.5	2.0
United States	1.2	0.3	0.7	2.1

Notes: OECD projections for increases in the costs of health and long-term care have been derived assuming unchanged policies and structural trends.

-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시기는 각 국별 재정상황(정부부채 수준,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다름
 - 서베이에 참여한 국가의 2/3는 2010년과 2011년, 이른 시기에 재정건전화 정책 집행(주로 시장의 신뢰를 잃거나, 재정악화 속도가 빠른 국가들)
 -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하거나 향후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 예정인 국가들도(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있음
- 재정건전화 규모가 작은 대부분(2/3)의 국가들은 지출 삭감 정책을 시행함

- 재정건전화로 세입 증가를 택한 국가들: 벨기에, 핀란드, 터키
- 대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한 국가들은 두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그림 4] 재정건전화 정책 수단: 지출 기반 vs 수입 기반



Note: Figures are the contribution to consolidation from expenditure and revenue measures weighted by the incremental volume of consolidation across each year reported.

□ 재정건전화 시행의 이유

- (1) 시장의 압력: 국가재정 위험이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대적인 재정건전화를 조기에 단행하여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가장 큰 재정적자 감축이 요구됨)
 - 헝가리,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 (2)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시행: 정부가 악화된 재정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GDP 대비 부채비율 60% 혹은 그 이하로

감축)하고, 주로 2012~14년에 건전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국가들(위 그룹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적자 감축이 요구됨)

- 영국,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3) 재정건전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대적인 건전화 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경기회복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정건전화 계획 발표를 미루는 상황(미국과 일본), 2025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8% 이상 감축해야 함

- 미국과 일본, 프랑스, 폴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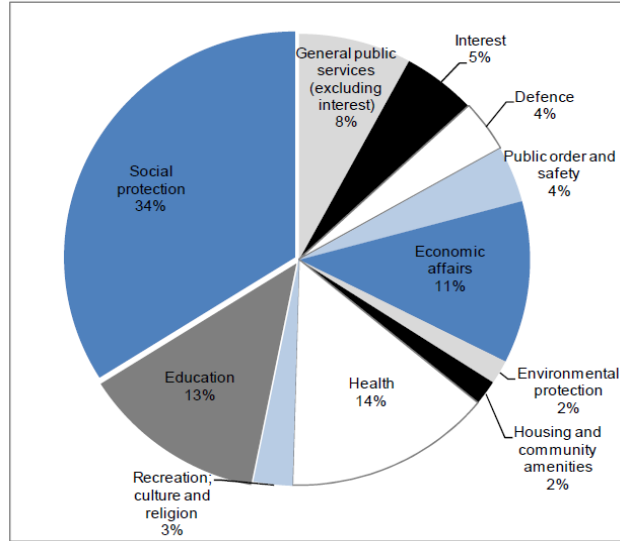
(4)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필요성이 적은 국가: 재정제도 강화 등을 통해 재정 상황이 악화되지 않은 국가

- 호주, 칠레, 핀란드,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가.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지출 삭감 정책

○ 정부 지출 구성: 사회보장과 의료, 교육 부문이 큰 포션을 차지

[그림 5] 일반정부 지출의 구조(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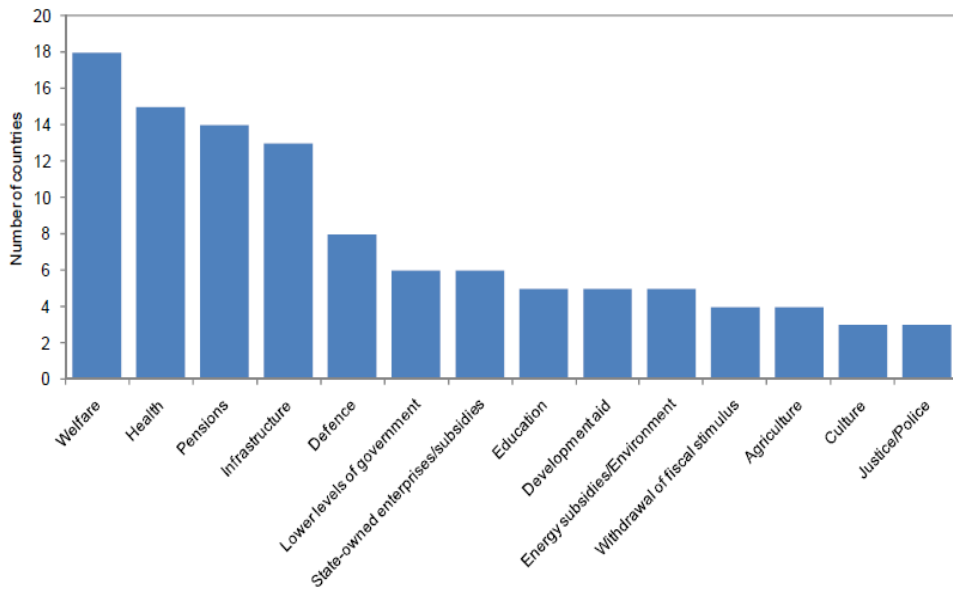


- ① 운영비용 삭감: 공무원 인력 감축 및 임금 삭감, 정부 조직 개편, 행정 효율성 개선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감축해야 할 운영비용 목표 설정: 프랑스는 중앙정부 운영비용의 10% 감축, 네덜란드는 모든 정부부문에서 2015년까지 60억유로 감축 (GDP 대비 1% 이상), 영국은 전체 각료의 운영비용을 2014년까지 33~42% 감축, 그리스는 GDP의 0.8% 감축
 - 구체적으로 감축할 운영비용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캐나다는 2013년까지 운영비용을 동결, 덴마크는 운영비용을 GDP 대비 0.5% 절약, 핀란드와 뉴질랜드도 운영비 절감
 - 공공부문 임금 삭감 목표 발표: 영국은 2년간 임금 동결, 체코는 10% 임금 삭감, 아일랜드는 14% 임금 삭감 등
 - 공공부문 인력 축소: 체코는 교사 포함 공공부문 인력의 10% 감원, 영국은 2014

- 년까지 공공부문 근로자를 330,000명 감원, 아일랜드는 25,000명 감원, 퇴직자 공석에 대해 일부만 신규 채용(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 정부 조직의 효율성 개선: 그리스는 지방정부 조직을 축소, 영국은 예산행정 개혁 단행

② 프로그램 비용 삭감: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감소, 의료 및 연금 부문 지출 축소, 사회보장 제도 개혁, 자본 인프라와 개발 원조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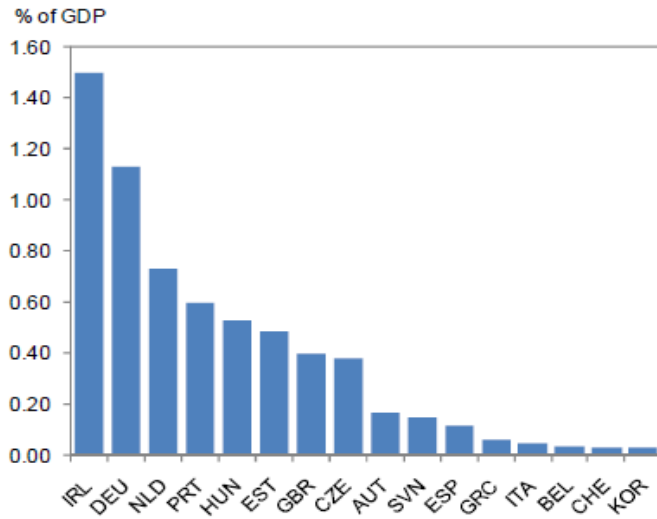
[그림 6] 주요 프로그램 지출 삭감 정책(빈도)



Note: Out of a total of 29 countries.

- 복지 혜택 축소(29개국 중 18개국): 독일, 아일랜드는 복지 지출 축소가 큰 국가들이고, 다른 국가들은 GDP 대비 0.4% 수준 삭감
 - 사회 이전지출 삭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예로 실업 및 육아급여에 대한 지출 삭감

[그림 7] 복지 지출 삭감 규모



- 의료(health) 지출 삭감(15개국): 아일랜드는 GDP 대비 0.7%, 그리스는 GDP 대비 0.9% 삭감 목표, 벨기에, 터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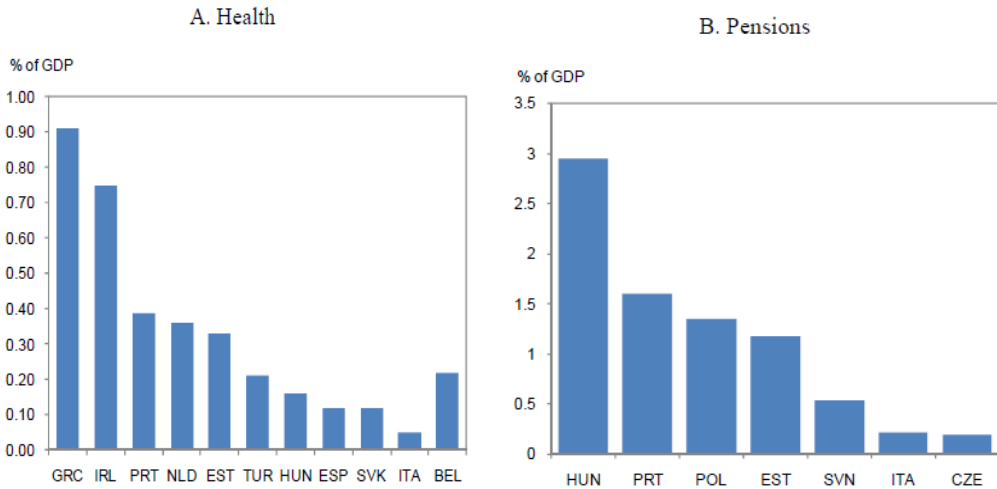
- 5개국은 약제비 절감 방안 사용 (터키는 약제비 마진을 80%에서 66%로 낮추고, 그리스는 약제비 지출을 2011년 GDP 대비 0.9%로 통제)

- 연금 지출 삭감(14개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하여 연금 수령 연령을 2세(호주, 프랑스, 독일)~5세(그리스) 상향조정, 연금혜택 축소, 조기은퇴 제약

- 단기적 효과를 불러오는 정책: 민간 연금 자산을 국가로 이전, 연금기금에 대한 국가보조 중단(예: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는 민간 연금을 국고로 귀속, 포르투갈은 텔레콤의 연금을 국가로 이전하여 2010~12년 GDP 대비 1.6% 수입 증가)

③ 기타: 전반적인 지출 축소, 공공소비 동결

[그림 8] 의료 및 연금 지출 삭감 규모



[그림 9] 연금수령을 위한 정년 연령 변화

Table 1.4. Changes in retirement age for pension benefits

Country	Year reformed	Retirement age (before reforms)	Retirement age (after reforms)	Implementation period
Australia	2009	65	67	2017-23
Estonia	2010	63	65	2017-26
France	2010	65 (for full pension benefits) 60 (minimum retirement age)	67 62	By 2018
Germany	2007	65	67	2012-29
Greece	2010	60 (women workers)	65	
Hungary	Planned	Lowering the retirement age for women who have at least 40 years of work experience		
Ireland	2011	66 (new entrants to the public service)	68	By 2028
Korea	2007	60	65	2013-33
Spain	Planned	65	67	
United Kingdom	Planned*	65	66	By 2020
United States	1983	65 (for full social security benefits)	67	By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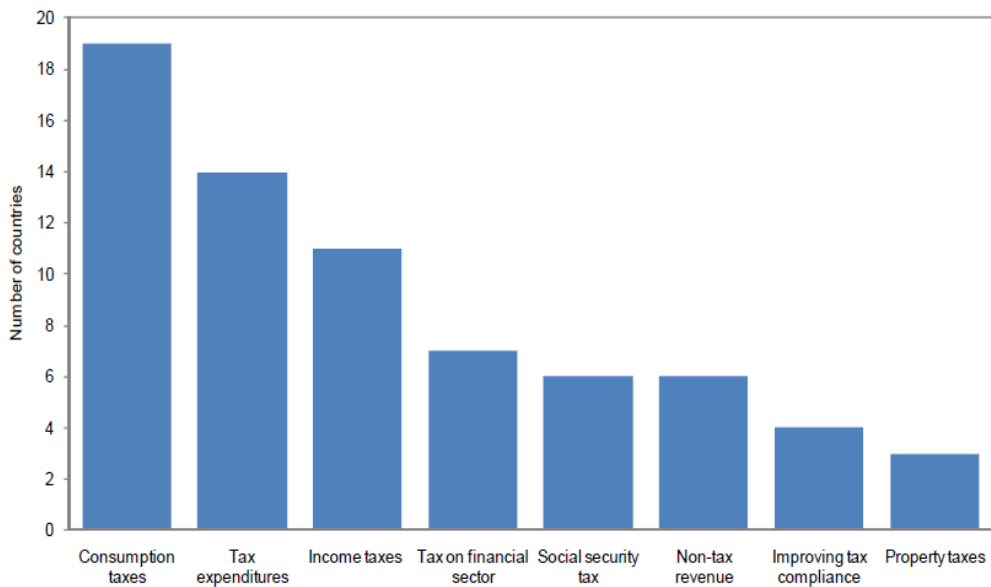
Note: * The Pension Bill 2011 was submitted to the House of Lords in January 2011.

Source: OECD (2010), "OECD Fiscal Consolidation Survey 2010", GOV/PGC/SBO(2011)2, OECD, Paris.

나.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수입 증대 정책

- 재정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국가들은(그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GDP 대비 3% 이상 수입 증대 목표

[그림 10] 수입증가 정책(빈도)



- 소비세 인상 정책을 가장 선호: 단기에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소득세 인상과 같이 경제성장을 해치는 역효과가 적기 때문
 - 부가가치 세율 인상: 체코, 핀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추가적 과세
 - 환경세(화석연료세, 에너지 및 폐기물세, 탄소세, 탄소배출량 허가제 옥션) 부과 혹은 연장: 일부 유럽 국가들
- 조세지출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프랑스, 포르투갈)
- 조세제도 개혁: 그리스, 슬로베니아

- 소득세 인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최저 소득세율 구간 하향조정(아일랜드), 세제혜택 자동적용 중단(덴마크)
 - 기타 조세수입
 - 사회보장 기여금 확대
 - 금융부문 과세: 독일, 오스트리아 등
 - 부동산세 인상: 3개국만
 - 1회성 수입 증가 정책: 공공기관 부동산 및 토지 매각, 배당금 증가(에스토니아), 국가 자산 민간에 매각(폴란드), 외환기금 잉여금 및 독립된 행정기관으로부터 상환금을 국고에 귀속(일본)
-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1회성 세입증가나 회계적 조작(공공지출을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금으로 돌리거나, 연금기여금을 국고로 이전), 운영비용 삭감 등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압력을 줄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재정 개선 방안은 될 수 없음

2. 각국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총 론〉

- 각국의 재정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음
 - 미국은 1990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비교적 양호한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 부채규모도 GDP 대비 80%에 근접하도록 증가
 - 캐나다는 2008년까지 10여 년 동안 흑자재정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경기부양책의 종결 등으로 재정상황이 회복되어 2015년부터는 균형 혹은 흑자재정 전망
 -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오랜 경기침체 및 거듭되는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비효율적인 공공사업 확대 및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른 세출 증대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
 -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3% 내외의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
 - 독일은 2008년 이전까지는 균형 혹은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으며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 2010년 말 경기부양책 종료 및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 영국은 FY2007/08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적자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 및 부채 규모 급속히 증가(부채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중)
 - 호주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예산 흑자를 실현해 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적자 기록

□ 본고에서는 각국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세입과 세출 측면으로 구분하고, 단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음²⁾

○ 단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정책

- 세입 측면

- ① 신규 세목 신설: 금융위기 책임금 부담 및 수퍼펀드세 부활(미국), 은행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핵연료세 신설(독일), 은행세, 온라인 광고세 및 스톡옵션 과세(프랑스), 은행세(영국), 특별세 및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호주)
- ② 기존 세목의 과세 대상 확대: 성과보수를 일반소득처럼 과세(미국), 연금소득 과세 대상 확대(프랑스)
- ③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소득세, 간접세, 보험료세, 자본이득세 인상(영국), 소비세율 인상 논의(일본)
- ④ 세제혜택 축소: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미국, 일본), 고용보험 부과세 인하 정책 중단, 화석연료 관련 세제혜택 폐지(미국), 주택수리환급 혜택 종료(캐나다), 보험구입, 배당금, 소득세, 기업 자산, 모기지론 원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프랑스), 소득세,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호주)
- ⑤ 자산매각: 영국

- 세출 측면

- ① 지출 통제: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미국), 행정부 인력 감축 및 보수 동결(프랑스), 공공부문 임금 동결 및 인력 감축(영국), 실질지출증가율 2%로 통제(호주)
- ② 지출 삭감: 재정사업 삭감(미국), 국방 및 해외원조, 행정비용 삭감(캐나다), 운영비용 절감(프랑스), 비효율적 공공사업 지출 삭감(영국), 중산층 이상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삭감, 미래대비 투자 예산 삭감(호주)

2) 편의상, 단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인면서 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에 정리하였음.

- ③ 지출 효율화: 복지사업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미국), 전략검토를 통해 비용 절감(캐나다), 공공부문 효율화(영국), 금융기관 간 자금조달 보증 및 예금보증정책 종료(호주)

○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정책

- 세입 측면

- ① 신규 세목 신설: 은행세, 온라인 광고세, 스톡옵션 과세(프랑스), 은행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핵연료세 신설(독일), 은행세 도입(영국), 자원세 도입(호주)
- ② 세율 인상: 소비세율 인상 논의(일본), 고용보험료율 인상(캐나다), 연금기여금 인상(프랑스), 사회보장세 인상(영국), 담배소비세 인상(호주)
- ③ 세제혜택 축소: 소득세, 법인세 관련 세제혜택 축소, 자동 조세지출 삭감 기제(미국), 조세지출 축소(프랑스)
- ④ 세제개혁: 국제조세체제 개혁(미국), 조세회피 방지(영국)

- 세출 측면

- ① 지출 관리 정책: PAYGO 원칙 및 세출 삭감(일본), PAYGO 원칙, 대통령의 신속재원 폐지 권한 요구, 보건·의료 지출 억제(미국), 중앙정부 지출에 대한 제로증가율 원칙(프랑스), 복지급여 상한 설정(영국)
- ② 지출 삭감: 비효율적 세출 삭감(일본), 재량지출 삭감(미국), 사회보장 혜택 축소를 통한 복지지출 삭감(영국), 공공사업 지연 및 국방비 삭감(독일)
- ③ 지출효율화: 법정지출 개선(미국), 지출분류 방식 변경 및 지출감사제도 도입을 통한 지출효율화 제고(프랑스)
- ④ 사회보장제도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미국, 일본), 연금개혁(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급여제도 간소화, 의료개혁(영국)
- ⑤ 재정제도 도입: 신지출관리제도인 전략검토 도입, 과거에는 지출통제법, 지출관리제도 운영(캐나다), 다년도 예산제도, 중기재정 도입(프랑스), 헌법에 재정준칙 도입, 중기재정계획(독일)

		세입 측면	세출 측면
재정 적자 감축 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책임금 부과 - 수퍼펀드세 부활 - 고용보험 부과세 영구화 -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 성과보수를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화석연료 관련 세제혜택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 재정사업의 종류 및 삭감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수리환급혜택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비 및 해외원조 삭감 - 정부 행정비용 삭감 - 전략검토를 통해 비용절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2006: 자산매각, 성장잠재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2006에서 세출 삭감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책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 인력 감축, 공무원 임금 동결 등 운영비용 절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책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책과 동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율 인상 - 소득세 인상 - 간접세(유류세, 주류, 담배세) 인상 - 은행세 도입 - 보험료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 자산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임금 동결/삭감 및 인력 감축 - 공공부문 효율화 - 비효율적 공공사업 지출 삭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정책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규정 강화를 통해 추가적인 세입 확충 - 호주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 수해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세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지출 증가율 2% 내로 통제 (예산흑자 달성 시까지) -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삭감 - 금융기관 간 자금조달 보증 및 예금보증정책 종료 - 수해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미래대비 투자 예산 감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축소 - 법인세 관련 세제감면제도 축소, 원천징주의 과세제도로 이행 - 조세개혁안이 채택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조세지출을 삭감하는 안전장치 도입 - 국제조세체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YGO 원칙 도입 - 신속재원 폐지(expedited rescission) 권한 요구 - 재정위원회 보고서: 재량지출 삭감, 보건·의료 지출 억제, 법정지출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료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출관리제도인 전략검토(2007) - 지출관리제도(1995) - 지출통제법(1992) - 연금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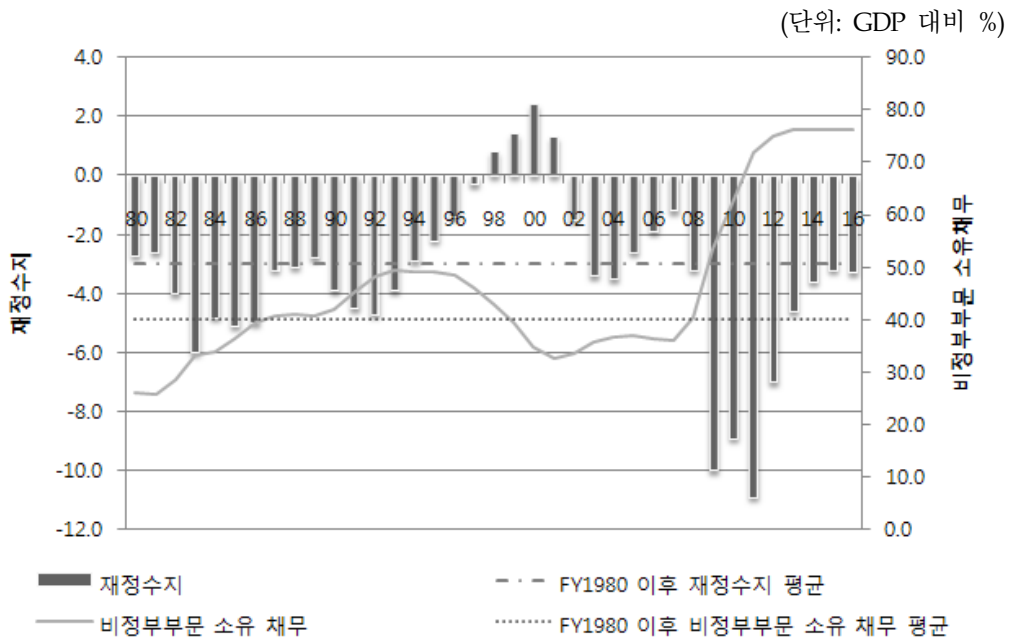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운영전략(2010. 6) • 사회보장 경비 등 의무지출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 소비세율 인상 • 중장기적 세입개혁을 통한 국가채무 비율 안정화 • 국채발행액 억제를 통한 재정상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 개혁 - 재정운영전략(2010. 6) • 2011-13 항구적 세출 삭감 • PAYGO 원칙 • 세출 재검토를 통한 비효율적 세출 삭감 • 재정목표(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및 평가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조체제 마련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혜택 축소(보험구입,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모기지론 원리금 등) - 세수 확대(은행세, 온라인 광고세, 연금소득 과세 대상 확대,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등) -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연금 기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도 예산제도 및 중기재정예산 - 지출 분류 방식 변경 및 지출 감사제도 도입 - 중앙정부 지출에 대한 제로증가율 원칙 도입(연금 및 채무상환비용 제외) - 연금개혁: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 - 의료개혁: 의료비지출 3% 내로 통제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핵연료세 등 신설된 세입항목 - 금융기관 구조조정법 - 적자감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을 개정하여 헌법에 재정준칙 도입 • 채무제한규정: 2016년까지 구조적 재정적자 GDP 대비 0.35%로 축소 - 재정안정화위원회 설립 - 중기재정계획(2011-2014) - 2011년 긴축예산안상 사회보장 지출 삭감, 공무원 및 군 인력 감축, 양궁 복원사업 등 공공건설사업 연기, 국방비 감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세(국민보험 기여금) 인상 - 은행세 도입 - 조세회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출 삭감: 고용지원수당 축소, 고세율납세자 자녀급여 중단, 근로세액공제 동결, 장애생활수당 축소, 지방세 보조급여 삭감, 가구당 복지급여 한도 설정, 근로세액공제 혜택 축소, 연금혜택 축소 등 - 복지제도 개혁: 연금 및 의료개혁, 급여제도 간소화, 급여상한 설정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세 도입 - 담배소비세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개혁: 수령연령 상향조정 등 -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 축소

I. 미 국

1. 재정추이

- 그간 미국은 FY1980 이후 FY2010까지 GDP 대비 평균 재정수지가 -3.0%에 불과할 만큼 비교적 양호한 재정수지 관리가 이루어져 왔음
 - 최근 있었던 금융위기 전까지 FY1980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는 FY1983의 GDP 대비 6%
 - FY1980~FY2010까지 31년 동안 GDP 대비 3.0% 이상 재정적자는 모두 16회

[그림 1-1] 미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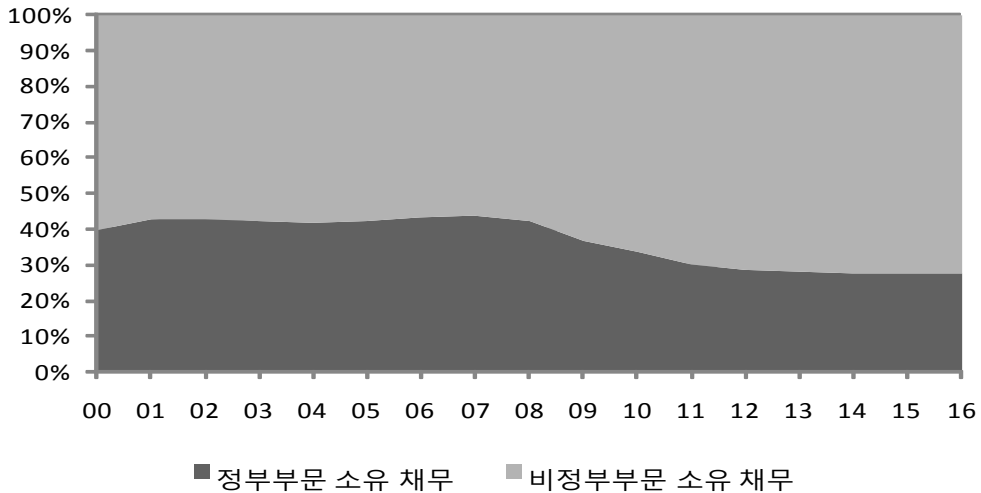
주: 1. 회계연도 기준
 2. FY2011~FY2016: 전망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 '06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침체와 '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불거진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부실자산 매입 및 지급보증,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
 - * GDP 대비 재정수지(%): (FY2006) -1.9 → (FY2007) -1.2 → (FY2008) -3.2 → (FY2009) -10.0 → (FY2010) -8.9
 - 이에따라,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도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증가 추세
 - * GDP 대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FY2006) 36.5 → (FY2007) 36.2 → (FY2008) 40.3 → (FY2009) 53.5 → (FY2010) 62.2

- FY2009년 이후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 및 부채 증가로 미 정부는 단기 재정수지 개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
 - 부채수준의 경우 부채의 1/3 정도를 미국 정부부문이 소유하고 있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여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향후 부채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채에 대한 관리 필요

[그림 1-2] 미 연방정부 부채 구성비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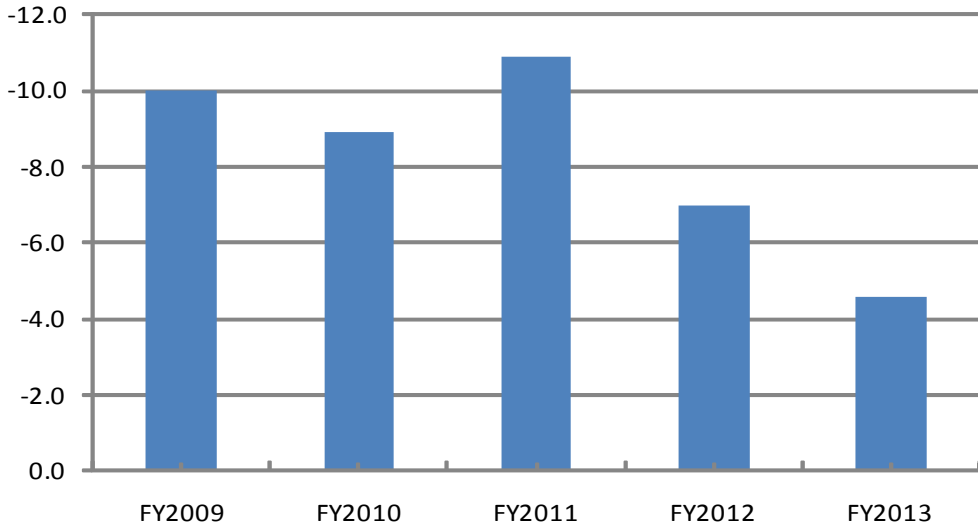
주: 1. 회계연도 기준
 2. FY2011~FY2016: 전망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2

2. 재정건전화 방안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급증한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대책을 제시
 - 취임 직후인 '09. 2월 제시한 FY2010 예산안에서는 현재까지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그림 1-3]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 재정적자 절반 감축 목표

(단위: GDP 대비 %)



주: 1. FY2011~FY2013: 전망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 이를 위해 복지지출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재정사업 통폐합 방안 마련,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등을 제안

□ 단기 재정적자 개선 목표와 더불어 복지급여 지출 증가 문제 해결 등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90년대 재정수지 흑자 달성에 기여한 PAYGO 원칙 도입 및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 논의를 위한 재정위원회 설립 등 책임있는 재정정책을 위해 노력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금융기관에 금융위기 책임금 부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폐지 등을 세입증대 방안으로 행정부에서 제안
 -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가 제안해온 세입증대 방안은 대체로 일관적인 모습
 - 다만, 고소득자들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감세법을 예정대로 종료시키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작년 12월 전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연장조치로 무산
 - 이번 FY2012 예산안에서는 작년 12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과 유산세를 기한대로 종료하고,
 - 대체최저한세(AMT)를 2014년까지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한도를 28%로 제한하여 AMT 연장으로 감소된 세입을 상쇄

<표 1-1> FY2012 예산안의 주요 세입증대 방안

(단위: 십억달러)

세입증대 방안	내용	세수증대 규모 ¹⁾
금융위기 책임금 부과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부과	30
수퍼펀드세 (Superfund tax) 부활	1995년 만료된 수퍼펀드세를 2012~2021년까지 특정 에너지 및 제조업체에 부과	20.8
고용보험 부가세 영구화	2011년 7월부터 고용주의 고용보험 부가세율이 0.2%p 인하되는 것을 현행대로 유지	15
국제조세체계 개혁	미국계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와 조세회피 방지	129.2
화석연료 관련 세제혜택 폐지	석유, 가스, 석탄회사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폐지	46.1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하여 과세	“services partnership interest”로 지정된 파트너십 지분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14.8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고소득층(부부합산: 25만달러, 독신: 20만달러)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최대 28%로 제한	321.2

주: 1) 향후 10년(FY2012~FY2021)간의 규모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2

2)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10. 12월 재정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법인세의 경우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개선 등을 권고

○ 2012년까지 세율을 인하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며, 조세관련 법령을 간소화하는 근본적인 조세 개혁안을 수립하도록 요구

- 모든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축소와 늘어난 세수의 일정 부분은 재정적자 감축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세율 인하와 필수적인 조세지출 및 세액공제에 충당

-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최고세율은 23~29%가 되도록 감축
- 2015년 800억달러, 2020년 1,800억달러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할당

-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은 근로, 주거, 보건, 기부금, 저축 장려를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소득세 누진도는 현행 유지 또는 증대
 -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되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원천지주의 과세 제도로 이행함
 - 23~29%의 단일한 법인세율을 설정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철폐
 - 보다 경쟁력 있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로의 이행을 권고
 - 신속한 조세개혁 도입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
 - 의회와 행정부가 2013년까지 조세개혁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면적인 조세지출 삭감을 취하는 등 안전장치 도입
- FY2012 예산안에서 국제조세체계 개혁을 통해 미국계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와 조세회피 방지 정책 수립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복지사업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 등의 재정정책 시행
 - '10. 7월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발효
 - 이 법에 따라 연방기관은 프로그램의 연간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 대상 프로그램의 유형을 확대하여야 함
 - 이에 따르지 않는 연방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것임을 규정
 -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매년 재정사업 통폐합 방안을 예산안에서 제안

- 동 통폐합 방안은 FY2010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재량지출 삭감규모의 60%를 의회가 승인
- FY2012 예산안에서는 200여 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을 통해 FY2012에만 총 330억달러의 예산절감 계획
- FY2011 예산안과 FY2012 예산안에서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을 제안
 - 아직 FY2011 예산안이 의회승인을 받지 못한 관계로 행정부 제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 FY2012 예산안에서는 FY2015년까지 비안보 재량지출을 동결하여 향후 10년간 약 4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1-2> FY2012 예산안의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단위: 십억달러)

재정건전화 정책	내용	예산절감 효과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비안보 재량지출을 FY2015까지 동결	FY2012~FY2021: 406
공무원 임금 동결	FY2011과 FY2012의 공무원 임금 동결	FY2011 잔여기간: 2
재정사업 통폐합	200여 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	FY2012: 33
국방지출 삭감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계획에서 삭감	FY2012~FY2016: 78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2)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PAYGO 원칙 도입, 신속재원 폐지(expedited rescission) 권한 요구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을 제안
 - '10. 2월 PAYGO 원칙을 규율하는 PAYGO 법이 대통령의 서명을 마치고 효력 발생
 - PAYGO 원칙은 신규 법정지출이나 세입감소 정책에 대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출감소 혹은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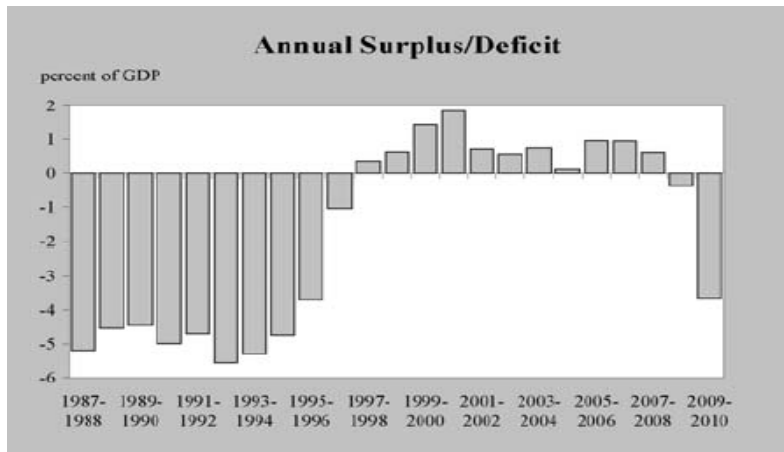
- 동 원칙에 위배되었을 시에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PAYGO 원칙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법정지출 프로그램에 일률적인 삭감 조치 시행
- FY2011 예산안에 이어 FY2012 예산안에서도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신속재원 폐지 권한을 제의
 - '10. 5월 정부입법안 제출 이후 FY2012 예산안에서도 대통령의 신속재원 폐지 권한 요구
- '10. 12월 재정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량지출 삭감방안, 보건의료비용 인상 억제, 법정지출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의 방안이 논의됨
 - (재량지출 삭감) 2020년까지 재량지출의 상한을 설정, 안보지출 및 비안보지출 모두 삭감 등
 - (보건·의료지출 억제) 고령자·장애자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수가 동결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장률(SGR) 체제 개편, 전체 의료보호 지출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증가율을 GDP+1%로 제한
 - (법정지출 개선) 연방공무원과 군인의 의료 및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2020년까지 700억달러의 예산을 감축
 - 농업보조 프로그램의 순지출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달러 감축하되, 농업재해기금은 확충하고 농업위원회에 관련된 기금의 재조정을 허용
 - (사회보장제도 개혁) 퇴직연금 공식을 보다 누진적으로 변경하고, 조기퇴직과 일반반퇴직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논의

Ⅱ. 캐나 다

1. 재정추이

- 캐나다 정부는 2008년까지 10여 년 동안 흑자재정을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로 인해 2008년 말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
 - 2008~09년 58억캐나다달러였던 재정적자 규모는 2009~10년에 556억캐나다달러로 대폭 증가, 수입은 전년 대비 145억캐나다달러 또는 6.2% 감소한 2,186억캐나다달러, 지출은 354억캐나다달러 또는 14.8% 증가한 2,742억캐나다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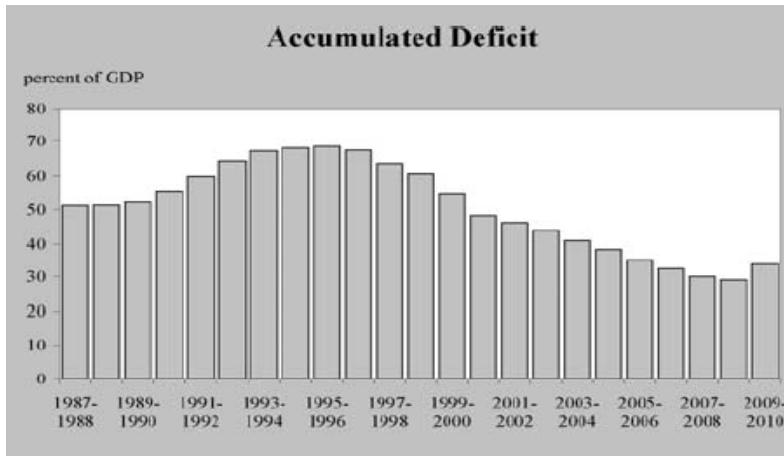
[그림 Ⅱ-1] 캐나다 재정수지 추이



자료 : “Public Accounts of Canada, 2009-2010,”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2010

-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내세운 경기부양책을 반영하여 2008~09년 61억캐나다달러였던 정부부채의 증가폭은 2009~10년에 554억캐나다달러에 이룸
 - 2010년 3월 말 현재 캐나다 정부부채는 GDP 대비 34.0%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부채 규모가 가장 높았던 1996년 부채비율 68.4%의 절반 수준임

[그림 11-2] 캐나다 정부부채 추이



자료 : “Public Accounts of Canada, 2009-2010,”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2010

<표 11-1> 과거 10년간 캐나다정부 재정추이

(단위: 억캐나다달러)

	3월 말 현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세입	1,943	1,839	1,906	1,986	2,119	2,222	2,360	2,424	2,331	2,186
프로그램 지출	1,306	1,362	1,467	1,537	1,764	1,752	1,883	1,995	2,079	2,448
이자지출	439	397	373	358	341	338	339	333	310	294
총지출	1,745	1,759	1,840	1,900	2,105	2,090	2,222	2,328	2,388	2,742
재정수지	199	80	66	91	15	132	138	96	-58	-556
정부부채	5,200	5,120	5,053	4,962	4,947	4,815	4,673	4,576	4,637	5,191

자료: “Public Accounts of Canada, 2009-2010,”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2010

- 경기부양책 Canada Economic Action Plan(CEAP)에 대한 지출로 캐나다의 재정수지는 2010~11년 454억캐나다달러 적자를 기록, 앞으로 CEAP 종결과 함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16년 26억캐나다달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규모는 2010~11년 GDP 대비 2.8%에서 2011~12년에는 GDP 대비 1.8%인 298억 캐나다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채 규모는 2012~13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16년 GDP 대비 부채 비율 30.8% 수준 기대
 - 캐나다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 48.3% 하락, 2008년에는 GDP 대비 22.4%를 기록했으며, 향후 이 수치는 다른 G7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표 11-2> 캐나다 재정전망(2010년 10월 현재)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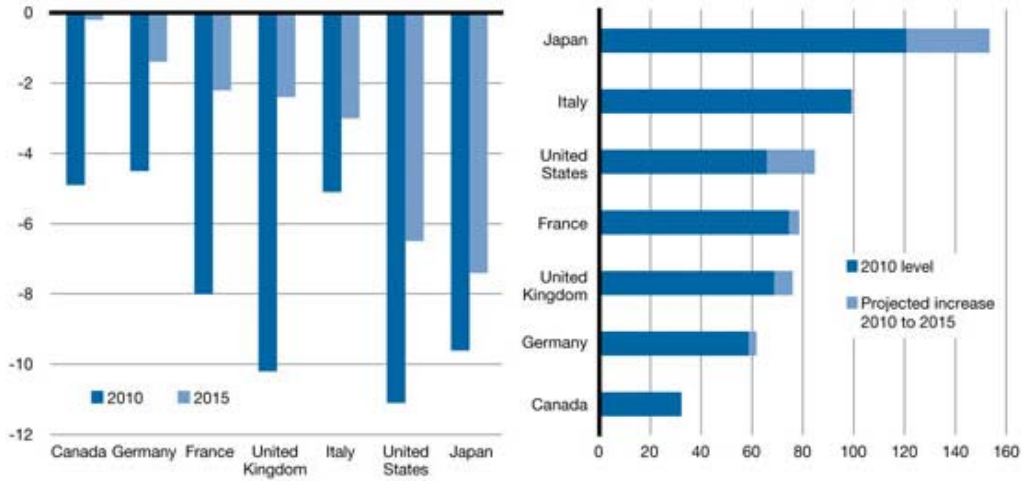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총세입	2,186	2,325	2,463	2,612	2,777	2,932	3,059
프로그램 지출	2,448	2,466	2,427	2,461	2,517	2,572	2,654
이자지출	294	313	334	364	375	378	378
총지출	2,742	2,778	2,761	2,825	2,892	2,950	3,033
재정수지	-556	-454	-298	-212	-115	-17	26
부채	5,191	5,645	5,942	6,155	6,270	6,287	6,261
총세입	14.3	14.4	14.6	14.8	14.9	15.0	15.0
프로그램 지출	16.0	15.3	14.4	13.9	13.5	13.2	13.0
이자지출	1.9	1.9	2.0	2.1	2.0	1.9	1.9
재정수지	-3.6	-2.8	-1.8	-1.2	-0.6	-0.1	0.1
부채	34.0	34.9	35.3	34.8	33.7	32.3	30.8

자료: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 IMF는 캐나다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는 2015년에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 캐나다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32.2% 수준으로 G7 국가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

[그림 11-3] 캐나다 전체정부 재정수지 및 GDP 대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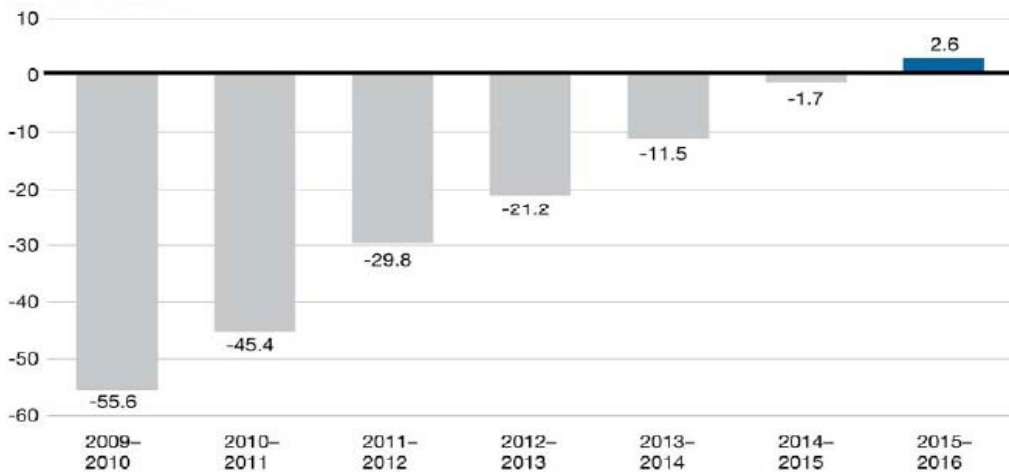
(단위: GDP대비 %)



자료: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그림 11-4] 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Source: Department of Finance.

자료: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2. 재정건전화 방안

- 캐나다는 1979년 정책지출관리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2년에 지출통제법, 1994년 프로그램 검토, 1995년 지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노력(재정동향 1호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대책으로 경기부양 2개년 계획(Canada Economic Action Plan)을 통해 총 600억캐나다달러를 투입했으며 이는 FY2010-11을 끝으로 종결됨(재정동향 5호 참조)
 - 2011년 3월 종결되는 CEAP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1) 캐나다 국민을 위한 세금부담 경감, 2) 실업자에게 혜택,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4) 미래경제 구축, 5)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 6) 지방정부 경기부양

- FY2009-10부터 6년간 총 175.8억캐나다달러를 절감할 계획으로 아래 세 가지 내용을 발표함(재정동향 2호 참조)
 - FY2010-11에 2개년 계획인 CEAP의 2차년도분을 시행한 후 2011년 3월부터는 경기부양책을 종료하는 출구전략을 실행
 - 프로그램 지출증가율 억제를 위한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를 설정
 - 행정부 기능 및 경상비용에 대한 종합적, 전략적 검토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재원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시킬 계획
 - FY2010-11부터 5년간 68억캐나다달러 절감
 - 모든 부서의 프로그램 전략을 검토 후 FY2010-11부터 5년간 12.6억캐나다달러 감축 계획
 - 과세체계 개선 등을 통해 FY2009-10부터 6년간 총 25.1억캐나다달러 절감

- 캐나다 정부는 2007년 기존 지출관리시스템(Expenditure Management System)을 개정한 신규 지출관리시스템으로 “전략검토(strategic review)”를 도입

- 각 부처, 기관, 공기업 등 의회로부터 세출예산을 배정받는 기관은 직접프로그램비용 및 법정 프로그램(statutory programs)의 운용비용에 대해 전략검토 과정을 거치게 됨
 - 모든 전략검토 대상 기관들은 각각의 프로그램비용 중 최하위 성과를 기록했거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사업에 대해 총 5%에 달하는 비용을 보고
 - 직접 프로그램비용 : 운용 및 자본비용, 보조금, 이전지출(교부금, 주·지방정부 분담금) 등의 연방정부 지출
 - 주요 법정프로그램(statutory programs)의 운용비용: 보건의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 사회이전지출(Canada Social Transfer), 평등화교부금(equalization), 노후혜택, 아동보조금, 실업보험 등
 - 전략검토 결과는 익년 예산안에 포함됨
 -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의 주도하에 전략검토 과정을 거치는 각각의 기관들은 외부의 독립된 자문단으로부터 반드시 의견을 받아야 함
- 2010년 3월, FY2010-11 채무전략(Debt Strategy)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목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
- 채무구조와 관련해서 적당한 금융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구조를 유지하고 국제거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최근 경제회복에 힘입어 총세입은 FY2010-11 전년 대비 6.3% 늘어난 후 차후 연평균 5.6%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2010-11년 세입은 2,325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로 예측되며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연평균 5.6%씩 상승, 세수 확충에 기여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소득증가 및 주택수리세금환급프로그램(Home Renovation Tax Credit)의 종결로 증가
 - (법인세)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증가, 기업 이윤증대와 함께 향후 연평균 5.4% 증가할 예정
 - (비거주자 소득세) 2015-16년까지 평균 약 6.8% 증가
 - (재화 및 용역세) 과세 대상 소비의 증가로 인해 전망시기(FY2015~16) 동안 평균 5.3% 증가
 - (관세) 전망시기 동안 평균 6%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

2)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재무부는 2009~2010년 2년간 고용보험료율을 소득 100캐나다달러당 1.73센트로 유지했으나, 2011년에는 보험료 인상폭을 소득 100캐나다달러당 5센트로 제한한 후, 2012년부터는 100캐나다달러당 10센트로 인상하여 고용보험료 수입이 FY2011-12부터 FY2015-16까지 평균 8.2% 상승할 전망

<표 II-3> 세입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조세수입(Tax Revenues)							
개인소득세	1,039	1,131	1,199	1,281	1,370	1,454	1,517
법인세	304	281	311	314	337	359	375
기타소득세	53	57	61	66	71	75	78
총소득세(A)	1,396	1,468	1,571	1,662	1,778	1,888	1,971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269	285	296	313	331	349	367
관세	35	34	36	38	40	43	46
기타소비세	101	105	107	108	107	104	104
총소비세(B)	406	424	439	459	478	496	517
총조세수입(C=A+B)	1,802	1,892	2,010	2,121	2,256	2,383	2,487
고용보험(D)	168	175	188	206	226	246	259
기타세입(E)	217	257	265	286	295	303	312
총세입(F=C+D+E)	2,186	2,325	2,463	2,612	2,777	2,932	3,059
개인소득세	6.8	7.0	7.1	7.2	7.4	7.5	7.5
법인세	2.0	1.7	1.8	1.8	1.8	1.8	1.8
재화 및 용역세	1.8	1.8	1.8	1.8	1.8	1.8	1.8
총조세수입	11.8	11.7	11.9	12.0	12.1	12.2	12.2
고용보험	1.1	1.1	1.1	1.2	1.2	1.3	1.3
기타세입	1.4	1.6	1.6	1.6	1.6	1.6	1.5
총세입	14.3	14.4	14.6	14.8	14.9	15.0	15.0

자료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정부는 지출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방비 및 해외원조 등에 대한 지출삭감 계획을 발표

- (국방) 캐나다군대(Canadian Forces) 혁신을 위해 마련된 장기목표인 *Canada First* 국방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캐나다 국방부의 지출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FY2012-13에 5.3억캐나다달러, 향후 2년간 10억캐나다달러씩 삭감할 계획
- (해외원조) 향후 해외원조 규모는 FY2010-11 수준으로 유지하며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매년 검토 후 예산 배정
- (정부 행정비용) 총리, 부처장관, 의원 등의 임금을 동결, 향후 2년간 업무예산 규모를 FY2010-11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정부 행정비용의 증가율 삭감
- (전략검토) 비용절감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정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전략검토 실시

<표 II-4> Budget 2010의 지출삭감 계획

(단위: 억캐나다달러)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총계
국방				5.3	10.0	10.0	25.3
해외원조			4.4	8.7	13.4	18.4	44.9
정부 행정비용		3.0	9.0	18.0	18.0	20.0	68.0
2009 전략검토		1.5	2.5	2.9	2.9	2.9	12.6
과세체계 개선 등	0.2	3.6	4.4	5.0	5.7	6.3	25.1
총계	0.2	8.1	20.3	39.8	49.9	57.6	175.8

자료 : Budget 2010, 캐나다 재무부

- 캐나다 국방부 및 기타 부처의 운영경비, 농가 지원, 주정부에 천연자원 로열티 지불, 학자금 보조, 공기업(Crown corporation) 운영비 지불 등으로 이루어진 직접프로그램비용을 향후 5년간 감소시킬 계획

<표 II-5> 프로그램지출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후혜택(Elderly benefits)	347	363	381	401	423	445	467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216	211	194	188	185	186	189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	123	130	134	137	138	139	139
소계(A)	686	703	709	726	747	770	795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357	372	387	407	427	447	470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62	164	169	177	186	195	203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27	-29	-31	-33	-35	-37	-39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 (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19	20	20	20	20	20	20
기타	60	5	0	0	0	0	0
소계(B)	570	533	545	571	598	624	654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99	401	357	331	318	303	305
감가상각(Capital amortization)	43	45	48	50	52	54	55
기타발생비용(Other operating expenses)	217	219	232	243	253	258	267
운영비 동결(Operating expenses subject to freeze)	534	564	536	539	550	563	578
소계(C)	1,192	1,229	1,173	1,163	1,172	1,177	1,205
총프로그램지출(A+B+C)	2,448	2,466	2,427	2,461	2,517	2,572	2,654
개인에 대한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5	4.4	4.2	4.2	4.0	4.0	3.9
정부부문 간 주요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7	3.3	3.2	3.2	3.2	3.2	3.2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7.8	7.6	7.0	6.6	6.3	6.0	5.9
총프로그램지출	16.0	15.3	14.4	13.9	13.5	13.2	13.0

자료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2)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캐나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 CPP)을 조정할 예정
 - 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할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이 증가
 -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종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수령액이 감소
 - 현재 65세 이하이고 일을 하면서 연금을 수령중인 경우 고용인 및 고용주는 CPP 분담금을 납입해야 함
 - 65~70세인 고용인이 CPP를 수령중인 경우 CPP분담금 납입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짐
 - 개인의 CPP 금액 산정 시 전체 소득 중 포함시키지 않는 최하위 소득 연수를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
 - 일을 중단하지 않고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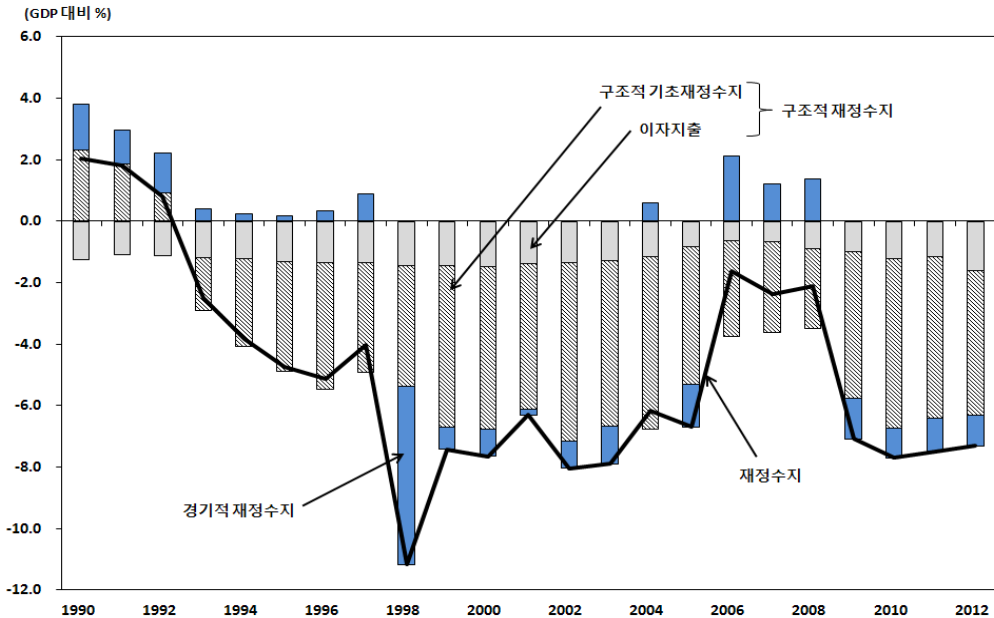
- 경기부양책이 종료되면서 캐나다는 차츰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중기적인 지출삭감 계획 등을 시행

Ⅲ. 일 본

1. 재정추이

-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장기침체로 이후 연평균 5%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를 보여 왔음
 -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거듭된 감세정책과 장기불황 지속으로 인한 세수 감소,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의 확대 및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른 세출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됨
 - 이후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어 2010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7.7%(37.1조엔)을 기록
 - 2008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 악화 요인에 기인하며, 급속한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량적 재정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구조적인 재정 적자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I-1] 일본 재정수지 및 요인분해 추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8, 2010. 11.

-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과거 20년 동안 국가채무는 약 590조엔 정도 증가
 - 이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충당 등을 위해 신규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 및 지방)가 1991년 59%(266조엔)에서 2010년 181%(869조엔)으로 급증
 - 세출 측면에서 1990년대 국가채무의 증가는 주로 경기대책 실시로 인한 공공사업비 증가에 의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에 기인
 - 1992~99년 중 총 9차례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공공사업은 65.5조엔 정도에 달함
 - 과거 20년간 공공사업 및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각각 62조엔, 148조엔 정도에 달함
 - 세입 측면에서는 경기 악화 및 감세조치로 인한 세수감소가 주요인이며 이에 따라 과거 20년간 세수증가 규모는 211조엔 정도에 불과

<표 III-1> 중앙 및 지방정부 국가채무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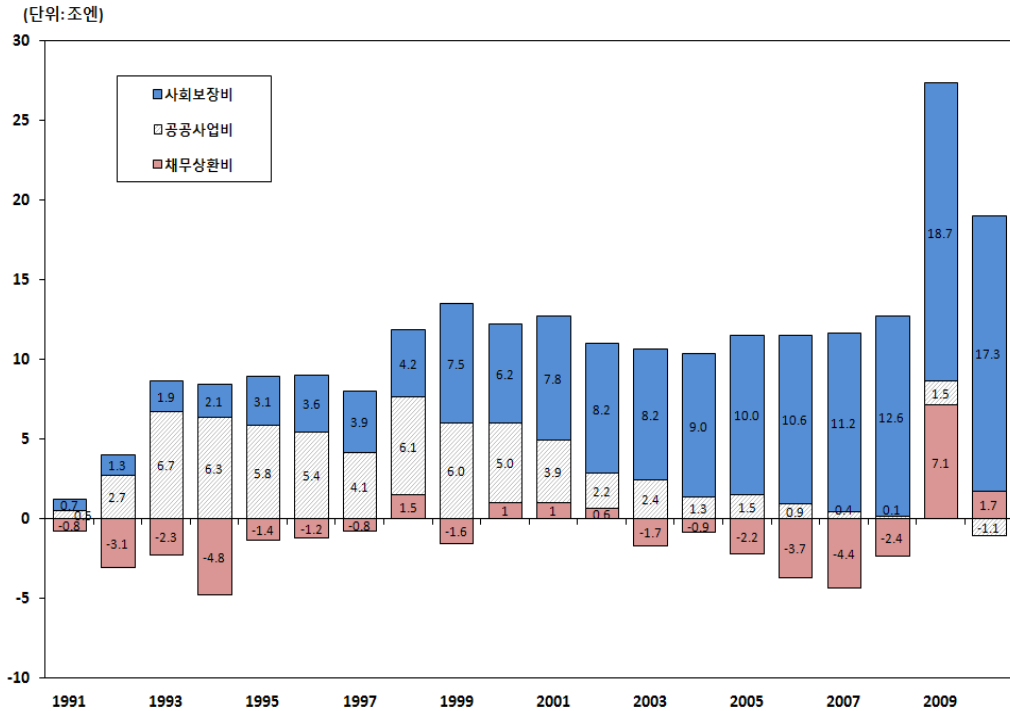
(단위: 조엔, GDP 대비 %)

구 분	1998	2003	2008	2010	2011
중앙정부	390 (58.7)	493 (92.6)	573 (111.0)	668 (134.0)	692 (138.0)
지방정부	163 (32.0)	198 (40.0)	197 (40.0)	200 (42.0)	200 (41.0)
합계	553 (111.0)	692 (140.0)	770 (157.0)	869 (181.0)	892 (184.0)

주: () 안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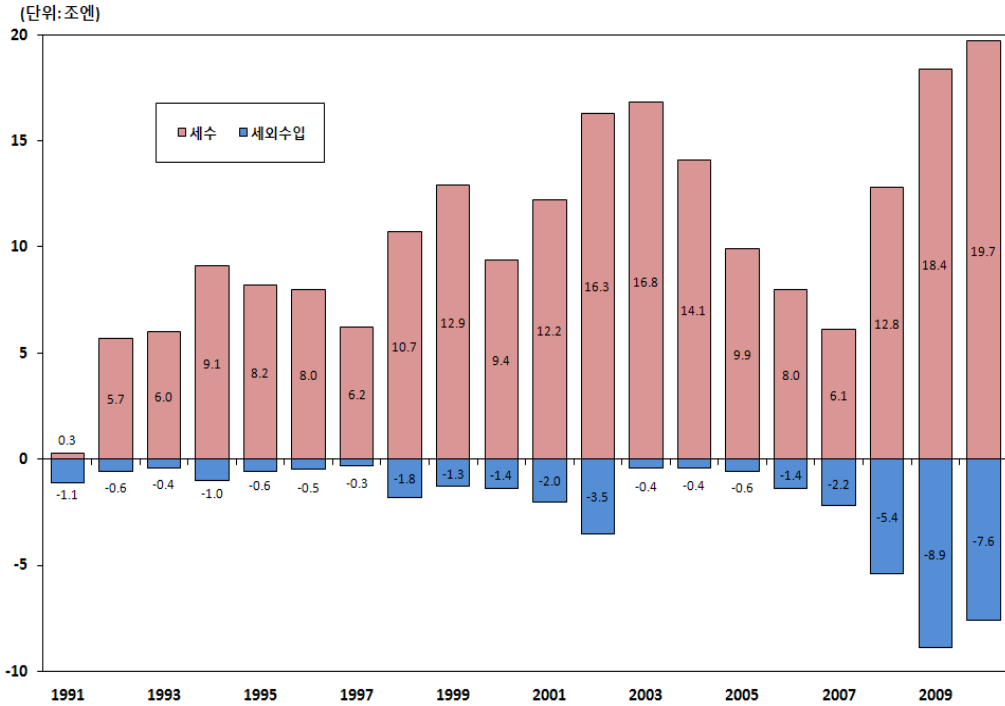
자료: 재무성, 『平成23年度予算政府案』, 2010. 12. 24

[그림 III-2] 국가채무 증가요인(세출 측면)



자료: 財務省,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0. 8.

[그림 III-3] 국가채무 증가요인(세입 측면)



자료: 財務省,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0. 8.

□ 국가채무 수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 국내의 높은 국채보유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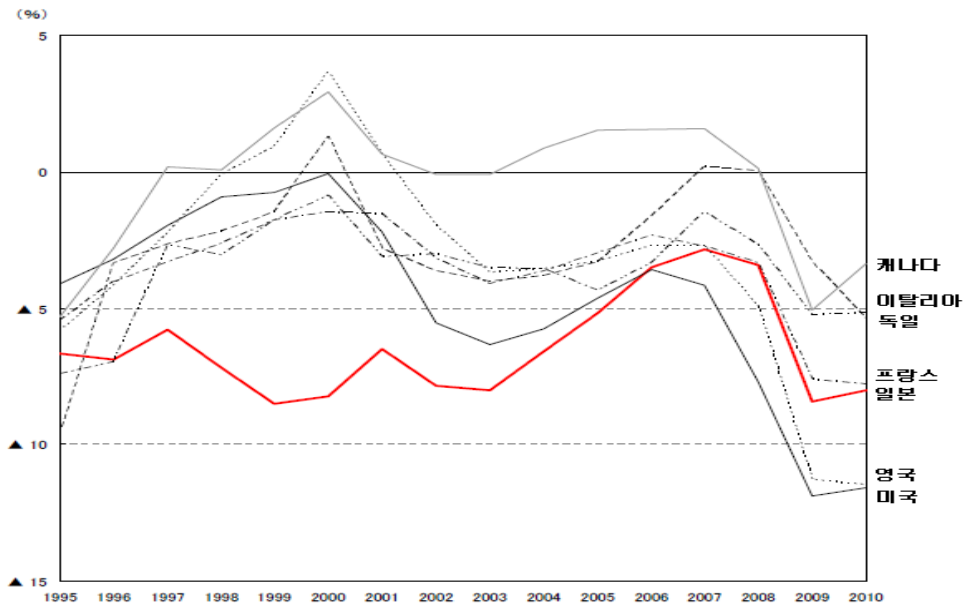
○ 일본의 국가채무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2009년 123.6%) 및 그리스(2009년 114.9%)보다도 높음

○ 일본정부의 국채금리는 1990년대 말부터 2%를 하회하다가 최근 1%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정부의 국채이자부담은 GDP 대비 1% 수준에 불과

○ 2010년 말 현재 전체 국채잔액 중 국내 금융기관을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보유 비율이 93.6%에 달하는 반면, 해외투자자는 나머지 6.4%에 불과

- 그러나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수요 회복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이 하락할 경우 국채의 국내 소화율이 저하되어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 내재

[그림 III-4]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 추이와 비교



자료: 財務省,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10. 8.

2. 재정건전화 방안

- 고이즈미 내각(2001~2006)은 규제 완화, 민영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 회복에 기여하였으나 재정개혁으로 연결하는 데 실패(GDP 대비 국가채무가 정권 초기 106.1% (538조엔) → 정권 말기 162.9%(823조엔)로 크게 증가)
 - 고이즈미 정권은 2006년 7월 경제성장과 더불어 재정개혁 목표를 담은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기본방침 2006」)³⁾ 발표

3)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은 경제재정자문회의가 2001년 6월 처음으로 결정한 당면 경제정책운영방안을 말하며 2009년까지 매년 6월 개정되었음

- ‘경제재정자문회의’⁴⁾를 통해 경제와 재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개혁해 나갈 것으로 써, ‘성장력 강화와 재정건전화의 양립’ 구현
- ‘세출·세입 일체개혁’을 선언하고 2011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및 201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인하를 목표로 추진
- 재정건전화 목표는 제Ⅱ기와 제Ⅲ기로 나누어 2단계로 추진
 - 1단계 전략(제Ⅱ기)은 2011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필요 재원 16.5조원을 세출 삭감 및 증세를 통해 조달
 - 2011년까지 사회보장, 인건비, 공공투자, 기타 분야에서 11.4조~14.3조원 세출 삭감, 나머지 2.2조~5.1조원은 세제개혁에 의한 세수 증대를 통해 조달
 - 2단계 전략(제Ⅲ기)은 201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감소시키는 전략을 추진
- 재정건전화 제Ⅱ기와 제Ⅲ기를 아래 원칙과 논의방침에 따라 일관적으로, 세출과 세입 양쪽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
 - 원칙 1 : 철저한 정부 축소로(세출 삭감, 자산 매각, 특별회계 개혁 등) 국민부담 증가를 최소화
 - 원칙 2 : 잠재성장력 강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재정건전화에 활용
 - 원칙 3 : 명확한 우선순위를 통해 성역 없는 세출 삭감 실시
 - 원칙 4 : 중앙·지방간의 균형 잡힌 재정건전화의 실현을 향해 협력
 - 원칙 5 :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의 1/2로의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하여 사회 보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
 - 원칙 6 : 최대한 자산채무를 감소, 자산매각 수입은 원칙적으로 채무상환에 충당 하여 채무잔액을 줄이고, 적절한 국채관리 정책을 추진
 - 원칙7 : 신규 국민부담은 정부의 비대화에 사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환원

4) 2001년 제2차 모리 내각의 중앙기관 재편에서 내각부와 같이 설립되었으며, 각료 및 학계, 재계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경제재정 및 예산편성의 기본구조를 마련하는 수상의 자문기관 역할을 담당.
 - 특히 고이즈미 정권에서는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며 예산편성과정 개혁, 삼위일체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였으나 이후 2010년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됨

<표 III-2> 단계별 재정건전화 목표

시 기	주요 내용
제 I 기 (2001~06년)	-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는 방침하에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민간주도의 경기회복을 실현함과 동시에 기초재정수지의 대폭적인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둠
제 II 기 (2007~10년대 초반)	-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확실하게 실현하는 시기 · 2011년도에는 중앙·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를 확실히 흑자화 · 재정상황이 심각한 중앙정부의 기초재정수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세출 삭감을 행하면서 세입의 일반재원의 소요 총액을 확보함으로써 흑자 기초 유지
제 III 기 (2010년대 초반~중반)	- GDP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을 낮추는 시기 · GDP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춤 ·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GDP 대비 채무잔액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 內閣府, 「經濟財政運營と構造改革に關する基本方針 2006」, 2006. 7.

- 이후 아베(2006~2007) 및 후쿠다(2007~2008) 내각은 고이즈미 내각의 「기본방침 2006」에 따른 기본적인 재정건전화 목표 및 방향을 그대로 추종
 - 그러나 아소(2008~2009) 내각은 2009년 6월 고이즈미 정권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악화를 이유로 포기
- 아소 정권은 2008년 12월 ‘중복지·중부담’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구축을 위해 중기 재원 확보 방안인 「중기 프로그램」을 발표
 - 세계경제의 혼란에서 3년 이내의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양질의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한 ‘중복지·중부담’의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의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실시한다는 계획
 - 특히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되는 재원은 전액 사회보장비용에 충당하여 모두 국민들에게 환원시킬 계획

- (소비세율 인상) 내각부 산하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시산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해 대폭적인 소비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
- 하토야마(2009~2010) 내각은 낭비적 예산의 삭감 등을 위해 ‘행정쇄신회의’⁵⁾ 주관하에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구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개혁을 단행
 - ‘행정쇄신회의’는 기존 사업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필요성, 타당성, 유효성 등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
 - 해당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단가 설정 및 실시방법 등을 검토
 - 특별회계의 고유재원에 의해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사업과 비교하여 과다 여부 등을 판정
 - 독립행정법인 등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시 자체재원 조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등
- 간(2010~현재) 내각은 2010년 6월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의 달성을 위해 재정건전화의 기본 방침을 담은 「재정운영전략」을 발표⁶⁾
 - 일본정부는 2010년 6월 「신성장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평균 명목 및 실질성장률을 각각 3%, 2% 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
 - 동 전략은 중장기 재정건전화 목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규율, 그리고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친 중기재정 프레임으로 구성
 - 2011년부터 3년 동안 세출 및 국채발행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

5) 민주당 신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포함한 행정진반에 대한 쇄신과 함께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쇄신회의’를 신설

6) 현재 추진 상황은 ‘<참고 1> 「재정운영전략」의 항목별 추진 내용’을 참조

<표 III-3> 「재정운영전략」의 재정건전화 목표

구분	주요 내용
수지(flow)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2015년까지 GDP 대비 적자비율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20년까지 흑자 전환 - 2021년 이후에도 국가채무 잔액 목표의 달성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
잔고(stock)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이후 중앙·지방의 GDP 대비 장기채무 수준을 현 181%에서 안정적으로 인하

자료: 國家戰略室, 「財政運營戰略」, 2010. 6.

○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재정운영은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을 기본으로 함

<표 III-4> 「재정운영전략」상 재정운영의 5대 원칙

구분	주요 내용
재원확보 원칙 (「PAYGO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의 도입 시에는 소요되는 재정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원칙으로 함
재정적자 감축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수지 목표를 위해 국채발행액 감축, 기초 재정수지 개선, 국채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조치 등을 통해 매년 재정상황이 개선되도록 예산편성
구조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의료 및 개호(노인들만을 위한 보험제도)의 급부 등 사회보장 경비와 같은 구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를 고려한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
세출 재검토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세출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의 필요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세출을 철저히 배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상호협력하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자료: 國家戰略室, 「財政運營戰略」, 2010. 6.

○ (중기 재정 프레임) 2011년부터 3년간 시행할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7)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구 분	주요 내용
국채발행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의 신규 국채발행액은 2010년 예산수준인 약 44조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억제 - 부채 감축을 위해 그 이후의 신규 국채발행액도 억제할 계획
세입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필요한 세입을 확보 - 조세특별조치는 2010년 세제개정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새로운 세제상의 조치는 그에 알맞은 신규 재원을 확보하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세출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2013년에는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에 준하여 항구적인 세출 삭감을 실시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의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규모(이를 「세출의 큰 범위」라 함, 71조엔)를 실질적으로 웃돌지 않도록 함 - 2011년 이후의 「경제위기 대응·지역 활성화 예비비」 1조엔에 대해서는 경기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 - 세출증가로 이어지는 정책을 새롭게 실시하거나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올해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의 규모가 「세출의 큰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다른 부문의 세출 삭감을 통해 재원조달

자료: 國家戰略室, 「財政運營戰略」, 2010. 6.

○ 중기 재정 프레임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편성

-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나 경비의 성격에 유의하면서 중기 재정 프레임과 종합적인 개산요구 범위를 각 부처별로 설정
- 또한 각 부서는 ‘신성장전략’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근거로 하여 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도록 예산을 편성
- 요구 후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각 각료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다시 검토하여 세출을 삭감

7) 단년도 예산주의가 갖는 경직적 세출 계획이나 예산의 이월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을 예산 주기로 설정한 다음, 해당 기간 내의 재정운영 방침을 제시

○ 중기재정전략의 개정

- 2011년 하반기 무렵, 당면한 경제전망이나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중기재정전략 개정을 실시하여 2012~2014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중기재정 전략을 설정
- 매년 중반 무렵, 다음 연도 이후 3년간의 새로운 중기재정전략을 수립
- 매년 책정한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개산요구 및 예산편성을 실시

□ 지난 20년간 일본정부가 책정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잠시 성과를 거두긴 하였으나 장기침체 지속 및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악화로 인해 모두 실패

-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은 재정구조개혁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구조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로 재정개혁을 철회
- 이후 고이즈미 정권의 재정개혁으로 기초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중은 2002년 -7.1%에서 2008년 -3.5%로 빠르게 개선
- 그러나 2006년 고이즈미 내각도 「기본방침 2006」을 통해 재정구조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출증대에 대한 압박으로 좌절

□ 최근 「재정운영전략」 발표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 전략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이번 재정건전화 목표는 2006년 고이즈미 내각의 목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목표 달성 시기만 지연시킨 것이어서 정책적 차별성이 떨어짐
- 「중기 재정 프레임」 중 세입확보 및 세출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않아 이행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
-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중 재정규율로서 ‘PAYGO 원칙’ 준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일본경제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
 - PAYGO 원칙은 경기악화에 따른 세출증가 압력으로 쉽게 파기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소임을 감안할 때 동 원칙 적용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재정운영전략의 핵심 지표인 기초재정수지는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시 국제상환부담이 급증할 경우 동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결국 채무의 현상 유지만을 의미
 -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한계 노정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 2008년 12월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중기 재원 확보를 위해 발표된 「중기 프로그램」의 핵심인 소비세율 인상 등은 여전히 논의 중
- 2010년 6월 발표한 「재정운영전략」 내용 중 ‘중기 재정 프레임’에 따르면 세입 측면에서 세제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을 강조
 - 자세한 내용은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참조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FY2011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감소분 충당을 위해 고소득층의 세금 공제 축소 등의 증세 조치를 병행
 - 이외에 조세특별조치 항목 정비, 환경세 인상 등으로 1.4조엔의 재원 확보
- 간 나타오 총리는 6월 17일, 참의원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밝힘
 -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5%이며 이 가운데 1%포인트의 세수는 지방에 배분, 국가에 귀속되는 나머지 4%포인트의 세수는 기초연금과 노인 의료·요양 등 사회보장 분야에만 투입하도록 1999년 예산총칙에서 규정

- 일본은 소비세율을 지난 1997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 이후 계속 이 수준을 고수하고 있음
- 간 총리는 현재 소비세 수준이 10조엔 정도가 부족한데다 사회보장비는 해마다 자연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
- 그러나 지난 7월 11일, 민주당은 ‘소비세 역풍’을 맞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주당은 연내 소비세 인상안 비준을 포기한다고 밝힘
- 민주당은 작년 8. 30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은 4년간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여론 악화

<표 III-6>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십억엔)

개정사항	규모
1. 법인세 : 감가상각제도, 조세특별조치 항목 정비 등	610.2
(1) 과세기반 확대: 감가상각제도 및 결손금 이월제도 재검토 등	584.9
(2) 조세특별조치 항목의 정비	21.9
(3) 의료용기기 등의 특별상각제도의 재검토 등	3.4
2. 개인소득세: 급여소득 및 부양공제, 퇴직소득과세 등의 재검토 등	247.3
3. 재산세	297.1
(1) 상속세 기초공제 인하	235.5
(2) 상속세 세율(최고세율 50%→55% 인상) 재검토 등	61.6
4. 소비세: 환경세 등 인상	246.1
합 계	1,400.7

자료: 財務省, 「平成23年度 税制改正(内國税關係)による増減收見込額」, 2010. 12. 16.

2)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2008년 12월 발표된 「중기 프로그램」의 핵심인 소비세율 인상 등은 여전히 논의중

- 2010년 6월 발표한 「재정운영전략」 내용 중 ‘중기 재정 프레임’에 따르면 향후 신규 국채발행 억제, PAYGO 원칙 도입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표 III-4> 「재정운영전략」상 재정운영의 5대 원칙’ 및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참조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 고이즈미 내각의 「기본방침 2006」에 의거하여 이후 아소정권까지 매년 세출개혁을 천명하였으나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세출 삭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침
 - 현재 일본정부가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세출 삭감 조치는 하토야마 정권에서부터 실시된 「재정사업구분」이 전부임

- 「재정운영전략」(2010. 6) 중 ‘중기 재정 프레임’에 따르면 세출 측면에서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에 준하여 항구적인 세출 삭감 등을 실시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참조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FY2010 예산안부터 ‘행정쇄신회의’의 「사업구분」 평가 및 종합 검토에 따라 세출 삭감 및 세입 확보
 - FY2010 예산편성 시 약 3.3조엔의 재원 확보

- 부처가 제출한 329개 사업의 예산요구안을 검토하여 예산요구 단계부터 9,692억엔의 세출 삭감
 - 독립행정법인·공공법인의 기금 국고반납,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1조 269억엔의 세입을 확보
 - 부처 예산요구단계에서의 세출 삭감을 통해 1조 3,122억엔의 재원 마련
- FY2011 예산편성 시에는 3,515억엔의 세출 삭감과 1조 3,984억엔의 세입확보로 약 1.7조엔의 재원을 마련

- FY2011 예산안편성 시 「재정운영전략」에 따라 2011년~2013년의 중장기 세출예산안이 포함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2013년에는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에 준하여 항구적 세출 삭감을 실시
 - 전년도 당초 예산의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 규모(이를 「세출의 큰 범위」라고 함, 71조엔)를 실질적으로 넘지 않도록 억제

<표 III-7> 2011~2013년도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

(단위: 조엔)

구 분	2010	세출의 큰 범위		
		2011	2012	2013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	70.9	71	71	71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예비비	1.0	1.0	1.0	1.0

자료: 財務省, 「財政運營戰略」, 2010. 6. 22

2)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2010년 6월 발표한 「재정운영전략」 내용 중 ‘중기 재정 프레임’에 따르면 향후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에 준하여 항구적 세출 삭감, PAYGO 원칙 도입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표 III-4> 「재정운영전략」상 재정운영의 5대 원칙’ 및 ‘<표 III-5> 「재정운영전략」의 중기 재정 프레임’ 참조

<참고 1> 「재정운영전략」의 항목별 추진 내용(2011년 1월 현재)

구 분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 목표(내각부 시산결과)	
(1) 수지(flow) 목표	
① 중앙·지방 기초재정수지	- FY2011 중앙·지방 기초재정수지(GDP 대비)는 전년 대비 0.9%p 향상될 전망 - FY2015 및 FY2020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지개선폭은 각각1.0%p, 4.2%p
② 기초재정수지	- FY2011 기초재정수지(GDP 대비)는 전년 대비 0.9%p 향상될 전망 - 2015년도 및 2020년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지개선폭은 각각1.5%p, 4.6%p
(2) 잔고(stock) 목표	- 2011년 국가채무는 전년(174%) 대비 177%로 악화될 전망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PAYGO 원칙	- (FY2011 예산안) 법인세 감세에 따라 증세조치 병행
재정적자 감축 원칙	- (FY2011 예산안) 전년 대비 신규 국채발행 및 국채의존도 감소 - 기초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상기 시산결과와 같으나 향후 불확실한 요소 증가에 따라 신중한 조치 필요
구조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 현재 사회보험서비스는 대부분 특례채권에 의존 -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1/2 유지는 여전히 문제
세출 재검토의 원칙	- (FY2011 예산안) 편성 시 ‘재편성 기준’ 및 ‘사업구분’에 따라 예산요구 시 2.5조엔의 세출 삭감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 (FY2011 예산안) 지방 일반재원 총액의 확보, ‘지역자율전략 교부금(가칭)’의 창설 등을 동 원칙에 따라 실시
중기 재정 프레임	
(1) 국채발행규모 억제	- FY2011 신규 국채발행액은 전년(44조 2,030억엔)수준을 하회하는 44조 2,980억엔
(2) 세입 측면	-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추진에 대하여’(2010. 12)에 근거하여 올해 중반까지 사회보장개혁방안 및 세제개혁안을 준비
(3) 세출 측면	-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전년(70조 9,319억엔) 수준을 하회하는 70조 8,625억엔 -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관련 일반재원 총액은 59조 4,990억엔으로 전년(59조엔 4,103억엔)과 비슷한 수준

<참고 2> 2002~2009년 일본의 재정건전화 정책

구 분	「구조개혁 및 경제재정의 중기전망」 (2002. 1. 25)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6」 (2006. 7. 7)	
본문 및 관련 자료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등	<p>【효율적·지속가능한 재정으로의 전환】 2010년초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의 중점화,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 행정사업의 효율화, PFI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구조개혁 추진을 통하여 세출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세출 억제 실시 - 중앙 및 지방의 이러한 대처를 통해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 - 「개혁과 전망」 기간 동안 정부규모(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규모)는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 	<p>【재정건전화 제II기('07~'10년초)】 제I기('01~'06)와 유사한 정도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고 2011년도에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한 기초재정수지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중앙 및 지방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정제건을 추진 -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과 함께 세출억제를 기본으로 세출 삭감을 단행하고, 세입 측면에서는 일반재원의 소요총액을 확보하여 흑자기조를 유지 <p>【재정건전화 제III기('10년초~'10년 중반)】 기초재정수지의 흑자화를 달성한 후, 중앙 및 지방에서 수치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일정한 흑자 폭 확보</p>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t년도, %)	-4.3 (2001년도)	-3.3 (2005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t+1년도, %)	-3.8 (2002년도)	-2.8 (2006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의 안정적 인하	<p>「개혁과 전망」 대상기간 이후에도 그 기간과 동일한 정도의 재정수지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민간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계속된다고 전제하면 2010년 초 기초재정수지가 흑자화될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의 동향도 금리 안정이 계속되면 비슷한 시기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 	<p>【재정건전화 제III기(2010초~2010년중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의 증가 억제 및 안정적 인하를 확보</p>
	기간	5년(2002년도~2006년도)	-
자산 결과 등	대상기간	2001년도~2006년도, 2010년도	※ 「향후 5년간 세출개혁」의 개요
	자산의 전제	<p>기초연금국고부담이 1/2과 1/3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지출: -3% - 인건비: 인원수 -0.5% - 사회보장비용: 의료제도개혁(2001. 11. 29) - 물건비: -1% - 기타 일반세출: 물가상승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2011년까지 - 재정건전화를 전제한 명목성장률 3% - 5년간 중앙 및 지방의 세출 삭감 · 사회보장: -1.6조엔 · 공공투자: -5.6~-3.9조엔 · 기타: -4.5~-3.3조엔 · 합계: -14.3~-11.4조엔 - 목표달성을 위한 규모(16.5조엔)과 세출 삭감에 의한 규모의 차이에 대해서는 세제개혁으로 대응
	최종연도의 명목GDP 성장률(%)	3.0 (2010년도) (기초연금국고부담 1/2 전제)	
	최종연도의 실질GDP 성장률(%)	1.9 (2010년도) (기초연금국고부담 1/2 전제)	
(참고) GDP 성장률	(명목)t년도 실적/전망	-2.4 (2001년도)	1.9 (2005년도)
	(명목)t+1년도 전망	-0.9 (2002년도)	2.2 (2006년도)
	(실질)t년도 실적/전망	-1.0 (2001년도)	3.2 (2005년도)
	(실질)t+1년도 전망	0.0 (2002년도)	2.1 (2006년도)

<참고 2> 2002~2009년 일본의 재정건전화 정책 <계속>

구 분		「경제재정 증장기방침의 10년 전망」 (2009. 1. 19)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9」 (2009. 6. 23)
본문 및 관련 지표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등	【기초재정수지의 동향】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악화로 경제 및 세입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2011년도까지 흑자화 달성의 전제가 되었던 세입개혁은 사회보장과 세입의 일체적 개혁 등을 검토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향후 「중기프로그램」에 따라 2010년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행 -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수지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당초 2011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상황에 있음	【재정건전화 목표】 10년 내에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 - 사상 최고 수준의 국가채무 및 이자 비용을 포함한 재정수지의 균형을 목표로 하여 수지개선 노력을 지속 - 경제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먼저 경기를 회복시켜 5년 이내에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경기대책의 부문 제외)의 GDP 대비 비율을 반감시키는 것을 목표 【재정건전화와 안심사회 실현】 「중기프로그램」과 「2009년도 세계개정」을 통해 세제의 발본개혁을 실시하고 사회보장기능의 강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구체화해 나갈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t년도, %)	-3.4 (2008년도)	-3.9 (2008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t+1년도, %)	-4.2 (2009년도)	-8.1 (2009년도) (경기대책 제외 시 -5.7)
	GDP 대비 국가채무의 안정적 인하	중앙 및 지방의 GDP 대비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인하를 확보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극히 중요한 준칙임 - 단카이세대가 모두 연금수급자가 되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절한 경제재정운영을 해나갈 것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목표로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10년대 중반에 걸쳐 적어도 안정시키고 2020년대 초까지 안정적으로 인하
	기간	향후 10년 정도	-
시산 결과 등	대상기간	2008년도~2018년도	2008년도~2023년도
	시산의 전제	【비교시산】 「기본방침2006」에 근거 - (경제) 순조회복/침체지속/급회복 - (사회보장) 사회보장기능 강화/기초연금공고 부담 1/2 + 자연증가 - (소비세) 유지/인상(3~7%) - (세출) -14.3조엔 삭감+비사회보장지출 유지/-11.4조엔 삭감+비사회보장세출 증가(물가상승률)	【증장기적 시산】 좌동
	최종연도의 명목GDP 성장률(%)	1.3~2.9~4.1 (2018년도) (시나리오별 전제)	1.2~3.3~4.2 (2023년도) (시나리오별 전제)
	최종연도의 실질GDP 성장률(%)	0.6~1.2~2.2 (2018년도) (시나리오별 전제)	0.7~1.2~1.9 (2023년도) (시나리오별 전제)
(참고) GDP 성장률	(명목)t년도 실적/전망	-1.3 (2008년도)	-3.6 (2008년도)
	(명목)t+1년도 전망	0.1 (2009년도)	-3.0 (2009년도)
	(실질)t년도 실적/전망	-0.8 (2009년도)	-3.3 (2008년도)
	(실질)t+1년도 전망	0.0 (2009년도)	-3.3 (2009년도)

IV. 프랑스

1. 재정추이

□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그에 대한 위기대응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 악화⁸⁾

○ 2007년 5월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2008년 9월 실물 경제가 크고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

- 기업 현금 및 신용흐름이 경색되면서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기업·부동산 투자 위축

- 대외교역이 악화('09년 수출증가율 $\Delta 11.4\%$, 수입증가율 $\Delta 7.6\%$)되고 실업률이 급증('07년 8.0% → '08년 7.4% → '09년 9.9%)

○ 52억유로 규모의 위기대응정책 및 324억유로의 미래투자계획 등 총GDP 대비 1.3%의 경기부양정책 실시

-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경우 정부가 민간에 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조기 집행

- 기업 현금흐름 개선, 투자 지원 등 소비보다는 생산에 집중

○ 이로 인해 FY2006까지 감소 추세이던 재정적자가 증가하여 FY2008에는 EU 안정 성장협약* 기준선인 GDP 대비 3%를 초과 ($\Delta 3.3$)

* EU 회원국은 재정적자 GDP 대비 3%(국가채무 GDP 대비 60%) 이내를 유지하고 관련 내용을 매년 EU 집행위에 안정(수렴)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적자감축조치)를 받게 됨

- 국가채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08 GDP 대비 67%까지 증가

□ 이에 따라 프랑스는 FY2010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재정건전화 기조를 FY2011에도 유지할 계획⁹⁾

8) 2009, OECD Economic Survey : France, Ch. 1

○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세수 증대 효과에 재정건전화 노력을 더하여 재정적자 FY2014 GDP 대비 $\Delta 2.0\%$, 국가채무 85.3% 달성 전망

* 성장률 전망 : ('09년) $\Delta 2.6\%$ → ('10년) 1.5% → ('11년) 2.0% (전망)

<표 IV-1> 프랑스 FY2007-14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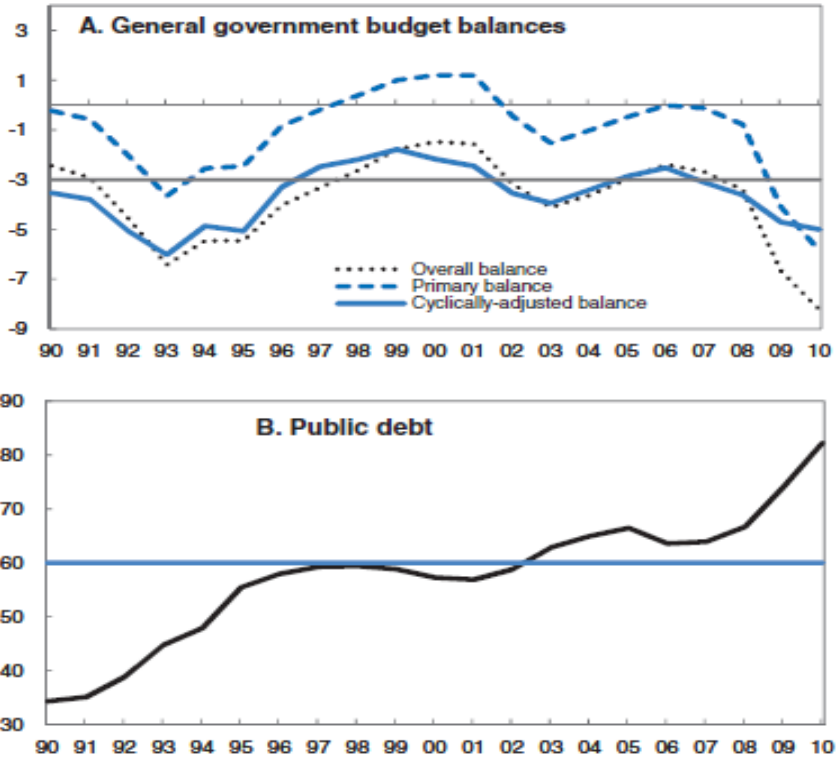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추정)	2011 (전망)	2012 (전망)	2013 (전망)	2014 (전망)
재정수지	$\Delta 2.7$	$\Delta 3.3$	$\Delta 7.5$	$\Delta 7.7$	$\Delta 6.0$	$\Delta 4.6$	$\Delta 3.0$	$\Delta 2.0$
국가채무	63.8	67.5	78.1	82.9	86.2	87.4	86.8	85.3

출처: 통계청(2007~09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및 FY2011-14 중기재정예산 (2010~14년) / 일반정부 기준

9) 2010, *OECD Economic Outlook*, Vol. 2, p. 97

[그림 IV-1] 프랑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Figure 1.4. **Budget balance and public debt**
Per cent of GDP



Note: Public debt is based on Maastricht definition. The data for 2009 and 2010 are based on OECD projections.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출처 : OECD Economic Survey : France

2. 재정건전화 방안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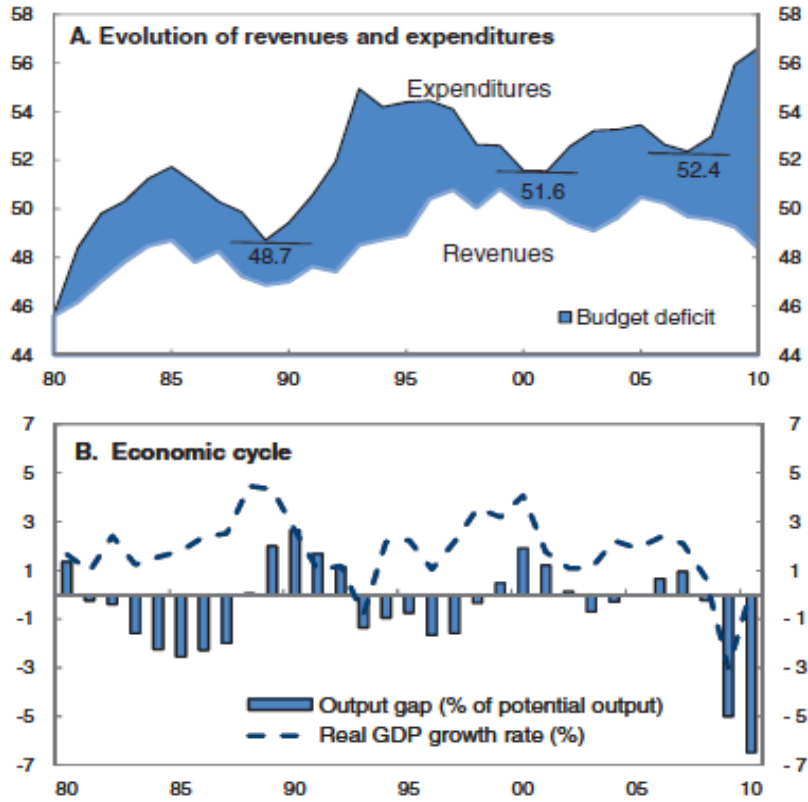
- (위기 이전 경과) 프랑스는 지출통제에 초점을 둔 재정건전화 노력을 2000년대 초반부터 기울여 왔음
 -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이미 40%를 상회하여 수입 증대 방안을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반면 지출규모 역시 큰 편에 속하여 지출 통제를 위한 제도 개혁을 실시해 왔음
 - 2001년 국가재정관리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2002년 제로증가율 원칙 도입 등
 - 그러나 재정이 균형에 근접하면 큰 폭의 지출증가가 뒤따르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만성적으로 증가
 - 또한 중앙정부에 국한되어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지출은 통제하지 못한 한계

- (위기 이후 경과)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EU 적자 감축조치 달성 의무를 가짐에 따라 기존의 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개혁 방안을 도입
 - EU는 프랑스의 FY2008 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자 2013년까지 재정적자 GDP 대비 3% 달성을 내용으로 하는 적자 감축조치 발표 (2009년 4월)
 - 프랑스는 2008년 헌법 제34조 개정¹⁰⁾에 의거하여 (4개년) 중기재정예산(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 및 (3개년) 다년도 예산(Budget Triennal de l'État)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
 - 또한 2007년 정부정책개혁(Révision générales des politiques publique)을 통하여 지출감사제도 도입

10) 2009, OECD Economic Survey : France, Ch. 1

[그림 IV-2] 경기변동과 수입지출 패턴 추이

Figure 1.5. The influence of the business cycle on public spending and revenues



Note: The data for 2009 and 2010 are based on OECD projections.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참고> 프랑스의 재정제도 개혁

- (지출분류 방식 변경) 부처별 지출 구분 대신 미션, 프로그램별(기능별)로 지출을 구분하여 예산 자원 관리의 효율화 도모
 - 각 미션/ 프로그램별 한도 내에서는 재량적 운용 가능
 - 2001년 국가재정관리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2006년 전면 도입

<표 IV-2> FY 2010-2011 미션별 지출 상한

(단위: 십억유로)

미션	2010 본(수정)예산	2011 예산법안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63	2.97
일반공공행정 (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60	2.45
농업 / 임업 / 수산업 (Agriculture, pêch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45	3.67
공공보조 - 저소득층 지원 / 외국인 이민자 지원 등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3.52	3.33
퇴역군인 지원 (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3.43	3.32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57	0.59
문화(Culture)	2.92	2.68
국방(Défense)	37.15	37.41
국가정책방향 - 정책통합 / 자유 및 권리보호 / EU 내 프랑스 지위 확보(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0.55	1.11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	10.15	9.51
산업 및 기업 지원(Economie)	1.94	2.06
교육(Enseignement scolaire)	60.85	61.79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11.58	11.75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0.56	0.56
법무부(Justice)	6.86	7.14
언론(Médias)	1.15	1.45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1.99	1.98
균형발전정책(Politique des territoires)	0.38	0.32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4.81	25.18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5.73	6.02
지방재정 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51	2.64
건강 복지(Santé)	1.20	1.22
치안(Sécurité)	16.40	16.51
시민안정 - 자연재해 및 화재 등(Sécurité civile)	0.43	0.43
사회통합 및 기회 균등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2.37	12.37

체육 및 건강 / 청소년 지원 (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85	0.43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1.41	11.57
건설 및 주택(Ville et logement)	7.81	7.63
정부재정관리 - 부채 관리 / 국채발행 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44.19	46.93
예비비(Provisions)	0.12	0.34
경제위기 대응 정책(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4.10	-
의회 / 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1.02	1.02
합계	285.23	368.54

자료: LPFP 2011-2014, LF 2011

- (중기재정예산) 향후 4개년 회계연도의 일반정부 재정지표 전망(목표) 및 근거(거시경제 및 재정여건)를 제시하고 달성수단을 수입·지출·구조개혁으로 나누어 예산상 효과와 함께 설명
 - FY2009-12(2009년 2월 9일), FY2010-13 (2010년 2월 2일)을 거쳐 현재 FY2011-14(2010년 12월 28일)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음
- (다년도 예산) 향후 3개년 회계연도의 중앙정부 일반회계(budget général)* 및 지방정부 지원금·EU 분담금의 지출계획 및 자원 배분을 설정
 - * 부속회계(budgets annexes) 및 특별회계(les comptes spéciaux) 제외
 - 일반회계의 미선별 상한만을 규정하며 이 한도 내에서 단년도 예산 수립 시 프로그램별 지출 승인* 규모 및 상한*이 결정
 - * 지출 승인(autorisations d'engagement): 법적 권한으로서의 지출 규모
 - * 지출 상한(crédit de paiement): 지출 승인 규모 이내에서 최대 지출 가능 규모(프로그램 간 예산의 이·전용 가능성 때문에 개념적 구분을 한 것)
 - FY2009-11 및 FY2011-13 총 2회 발간되었으며 국회 심의 대상은 아님
- ※ 다년도 예산은 중기재정예산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단년도 (중앙정부) 예산 및 사회보장예산은 중기재정예산 및 다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수립

- (지출감사제도 도입) 모든 정부 지출에 대해 정부·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를 실시하여 지출 효율성 제고
 - 이로 인해 70억유로의 지출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약 1조유로 규모의 예산에 비해 비중이 작고 중앙정부에 국한
 - 정부정책개혁(Révision générales des politiques publique)의 일환으로 FY2008-11 동안 시행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프랑스의 재정건전화는 지출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수 확대 조치는 세제혜택 축소, 세원 확대 등에 국한
 - 대부분 FY2011 본예산 및 사회보장예산¹¹⁾에 반영되어 있으며, 모두 영구적인 조치이므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제고

11) 프랑스 사회보장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국회)심의·운영되며 보험료 외에도 본예산의 세수 일부를 전용하거나 별도 세원을 확충할 수 있음

<표 IV-3> 세수증대 방안 주요 내용

출처	구분	주요내용
FY2011 본예산	세계혜택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계약 시 세금면제 혜택 폐지(세율 3.5% 적용) - 45,000유로 규모 이하 중소기업 자산에 대한 세율 인하폭을 하향 조정(75% → 50%) - 배당금에 적용되던 소득세 공제 폐지 - 인터넷, 전화, TV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5.5% → 19.6%) - 2020년까지 전기의 1%를 포토볼타릭(전지)로 사용토록 함에 따라 해당 산업에 투기성 버블이 발생하자 관련 세금공제를 축소 - 결혼(법적 동거 포함) 및 이혼 당년에 제공되던 세제 혜택 폐지
	다양한 세원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지론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공제 혜택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신 향후 모털헤저드 방지를 위하여 1주택 소유자 대출 조건 강화 - (은행세) 최소요구자본금에 대하여 0.25% 세율 적용 - 온라인 광고에 대하여 1% 세율 적용 - 월 400유로 초과 연금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011년 1월 이전 수급개시인 경우는 월 500유로 초과 시 적용 - 국가의료보조 수급 개시할 때 등록비 30유로 부과
FY2011 사회보장 예산	신규 재원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혜택 감축 및 신규 과세(FY2011 본예산* 및 사회보장예산 통해 마련)로 80억유로 마련 * 세제개편 내용 중 일부가 사회보장예산에 충당 - 주요 내용은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참고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연금개혁) 연금재정 확충을 위한 수입증대방안(2010년 6월 16일 발표)이 상원을 통과
(2010년 10월 22일)하여 2011년부터 시행 예정(FY2011 사회보장예산안 반영)
 - (배경) 연금재정 적자가 2010년 323억유로, 2030년 700억유로(GDP 대비 약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 (연령기준 강화) 법정 은퇴연령 점진적 연장(2010년 만 60세 → 2018년 만 62세) 및
연금수령 개시연령 연장(만 65세 → 만 67세)
 - (세율 인상) 소득세, 부동산 양도세를 1%p 인상하는 등 세제개편을 통한 수입증대
분을 연금재정에 투입

<표 IV-4> 연금재정 관련 주요 세제개편 내용

(단위: %)

구분		현행	개편
고소득층 소득세		40	41
스톡옵션	고용인	10	14
	피고용인	2.5	8
부동산 양도세		16	17
배당 및 이자소득세		18	19

- (요율 인상) 공공부문 종사자 연금보험요율을 민간부문과 같도록 상향 조정(현행 7.85% → 2020년 10.55%)
- (효과) 2020년까지 총 2,200억유로 수입 증대로 재정적자 감축*에 약 0.5%p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2010년) GDP 대비 7.7% → (2014년) GDP 대비 2.0%
 - 또한 법정 은퇴연령을 연장함으로써 노령 인구의 노동참여율을 제고하는 구조개혁 효과도 기대
- (부채 탕감) 약 1,300억유로 규모의 사회보장기금 부채*를 부채상환기금(la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에 이전하여 새로운 재원 마련
 - * 연금개혁이 완료되기 이전인 2011~18년 동안 발생할 연금재정 적자 620억유로 포함
- 잔여 부채는 340억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32억유로씩 상환 예정(2011년에는 35억유로)
 - 이는 기금 운영 기간인 4년을 초과하는 상황 일정으로 이 외에도 자산유동화, 연금준비금 등으로 보충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¹²⁾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FY2011-14 중기재정예산에서는 FY2014까지 재정적자 GDP 대비 $\Delta 2.0\%$ 및 국가채무 GDP 대비 85.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FY2013까지 재정적자 GDP 대비 3% 달성도 여전히 유효하여 EU 적자감축 조치 또한 완수 가능하다고 전망

<표 IV-5> 재정건전화 목표

(단위 : GDP 대비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09-FY2012 재정안정화계획							
성장률	1.0	0.2-0.5	2.0	2.5	2.5	-	-
재정수지	$\Delta 2.9$	$\Delta 3.9$	$\Delta 2.7$	$\Delta 1.9$	$\Delta 1.1$	-	-
구조적 재정수지	$\Delta 2.4$	$\Delta 2.7$	$\Delta 1.4$	$\Delta 0.7$	0	-	-
국가채무	66.7	69.1	69.4	68.5	66.8	-	-
FY2010-FY2013 재정안정화계획							
성장률	0.4	$\Delta 2.3$	1.4	2.5	2.5	2.5	-
재정수지	$\Delta 3.4$	$\Delta 7.9$	$\Delta 8.2$	$\Delta 6.0$	$\Delta 4.6$	$\Delta 3.0$	-
구조적 재정수지	$\Delta 3.1$	$\Delta 5.8$	$\Delta 5.8$	$\Delta 4.0$	$\Delta 2.8$	$\Delta 1.6$	-
국가채무	67.4	77.4	83.2	86.1	87.1	86.6	-
FY2011-FY2014 중기재정예산							
재정수지	-	-	$\Delta 7.7$	$\Delta 6.0$	$\Delta 4.6$	$\Delta 3.0$	$\Delta 2.0$
국가채무	-	-	82.9	86.2	87.4	86.8	85.3

출처: FY2009-2012 재정안정화계획, FY2010-2013 재정안정화계획, FY2011-14 중기재정예산

12) <http://www.performance-publique.gouv.fr/le-budget-et-les-comptes-de-letat/approfondir/le-budget-pluriannuel-de-letat-2011-2013.html> 등

- 이에 따라 FY2010, FY2011 본예산에서는 제로증가율 원칙(중앙정부에 국한)을 주요 기조로 채택하여 지출 절감을 통한 적자 감축 도모
 - (의미) 연금 및 채무 상환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출의 실질증가율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약 1.2~1.75%의 명목증가율을 의미
 - (배경) 연금 및 채무상환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예산의 이·전용을 방지하기 위함
 - 특히 최근 연금개혁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전용되지 않도록 함
 - (효과) FY2006-10 동안 증가한 일반회계 지출 및 지방정부 보조금, EU 지원금 29 억유로가 FY2011-13 동안 절감될 것으로 기대
 - 단, 인구·가격변수 등 자연증가분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 및 새로운 세원 창출이 필요할 전망
 - 이를 위해 FY2010, FY2011 본예산 및 사회보장예산에서는 다양한 지출 억제 수단을 강구

<표 IV-6> 예산상 지출축소 방안 주요 내용

출처	주요내용
FY 2010 본예산	- (행정부 인력 감축) FY2010에만 3만 4천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약 30억유로) - (행정비용 절감) 공무원 임금 동결, FY2009-10 동안 약 1%에 해당하는 운영비용 절감
FY2011 본예산	- (인력 감축) 퇴직인력의 절반만을 신규 채용
FY2011 사회보장예산	- 주요 내용은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참고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의료개혁) 의료지출을 통제하고 의료효과가 높은 항목에 지출을 집중
 - (배경) 고령화에 따라 의료지출이 증가하고 장애·노령이용자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

- (의료지출 통제) 의료지출증가율 목표(ONDAM) 3% 이내로 지출을 통제하여 관리 강화(2012년 이후에는 2.8%)

<표 IV-7> 사회보장(의료) 지출전망

(단위 : 억유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지출	3,165	3,276	3,379	3,493	3,605
의료지출	1,624	1,671	1,718	1,766	1,816
증가율 (%)	-	2.9	2.8	2.8	2.8

- (장애·노령 서비스 강화) 2009년 장애·노령이용자 관련 지출 전망은 3.8%로 ONDAM 평균 2.9%보다 높아 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
 - 양로원 요양시설 확충 및 재택 지원 증대(Le Plan de Solidarité Grand)
 - 치매 관련 데이케어, 임시보호시설 설립을 가속화하여 2008~2012년 동안 175개를 개소하고 환자 자립을 위한 35개 시설도 설립(Plan Alzheimer 2008-2012)
- (재정준칙)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 추진
 - (배경)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재정이 악화되고 EU 차원의 재정관리도 강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이 적자감축회의*를 통해 제안
 - * 적자감축회의(la Conférence sur le déficit) : 2010년 1월 및 5월 2회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수상 및 내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어 재정개혁기조 및 구체 방안을 논의. 지방재정·의료지출·사회보장기금 부채 등 이슈별로 산하 실무진을 운영하였으며, 합의된 내용 중 일부는 FY2011-14 증기재정예산, FY2011 예산 및 사회보장예산에 반영

- (주요내용) 독일과 같이 헌법을 통한 수량적 재정준칙(구조적 재정수지 균형)을 마련하고,
 - 이와 연계하여 예산 및 사회보장예산의 지출 상한 및 수입 하한 설정
- 2011년 6월 중에 입법화 추진 예정

V. 독 일

1. 재정추이

□ (재정적자) 2008년 이전까지 재정수지 흑지 또는 균형재정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2차에 걸친 추경예산)에 따라 2010년까지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 2010년 말 경기부양책 종료 및 경제성장세 회복의 영향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

<표 V-1>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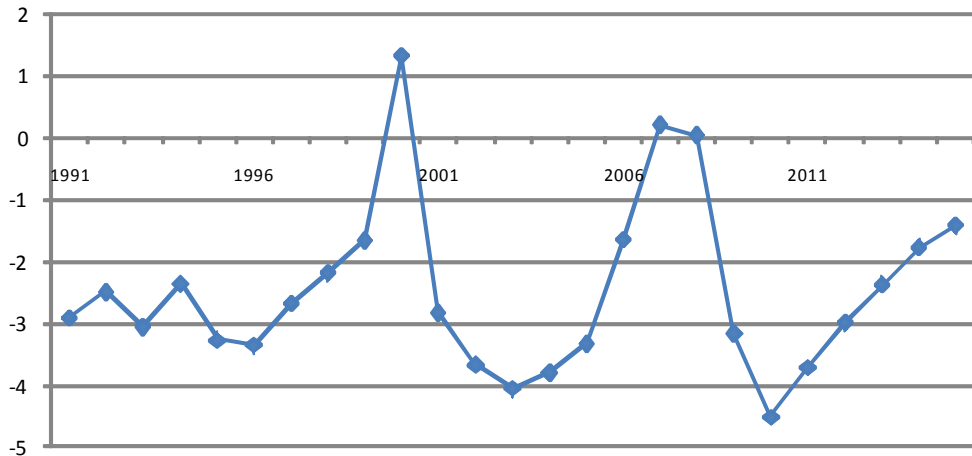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IFO	-	0.1	-3.0	-3.5	-2.3	-
KIEL	-	0.0	-3.0	-3.3	-2.9	-2.4
EU 집행위원회	-	0.1	-3.0	-3.7	-2.7	-1.8
IMF	2009. 11	-0.5	-	-4.2	-4.6	-
	2010. 5	0.2	0.0	-3.3	-5.7	-5.1
	2010. 11	0.2	0.0	-3.1	-4.5	-3.7
	2011. 1	-	0.0	-3.0	-3.5	-2.6

자료: IFO: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KIEL: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2010. 11
 IMF, Fiscal Monitor, 2009년 11월~ 2011년 1월

[그림 V-1]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추이(전망치 포함)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0년 10월

□ (부채) 2008년까지 GDP 대비 60%대를 유지하던 부채규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7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

○ IMF에 따르면, 최근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당분간 GDP 대비 70%대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표 V-2> 독일정부 총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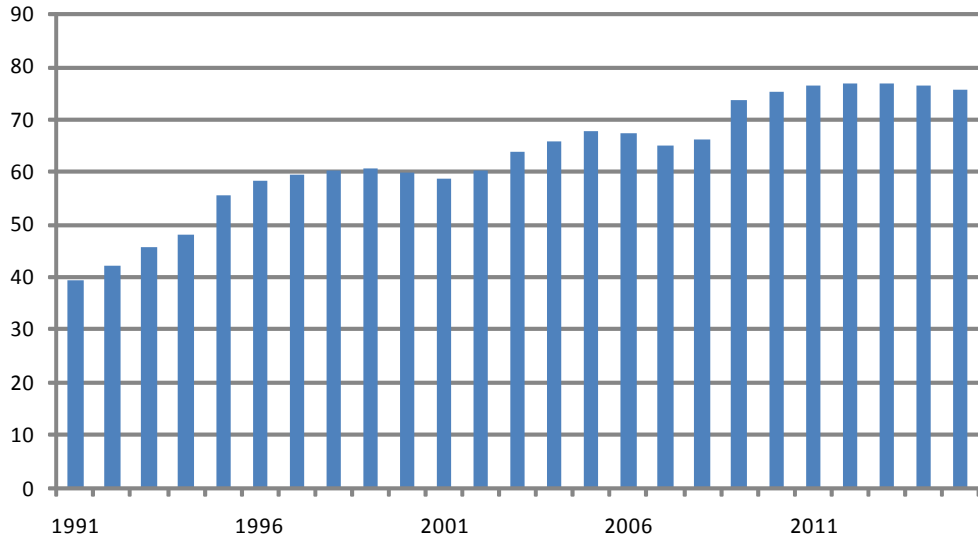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EU 집행위원회		64.9	66.3	73.4	75.7	75.9	75.2
IMF	2009.11	63.4	-	78.7	84.5	-	-
	2010.5	65.0	65.9	72.5	76.7	79.6	-
	2010.11	64.9	66.3	73.5	75.3	76.5	77.0
	2011.1	-	66.3	73.5	76.6	77.1	77.1

자료: IMF, Fiscal Monitor, 2009년 11월~2011년 1월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0년 10월

[그림 V-2] 독일정부 총부채 추이(전망치 포함)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0년 10월

2. 재정건전화 방안

- (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재정수지 악화 및 EU ‘안정 성장협약(European Stability and Growth Pact: 이하 SGP)’ 기준 준수 의무, 기타 정치적 고려 등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결과, 재정적자 및 부채규모 급증
 -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SGP상의 재정적자(GDP 대비 3%) 및 부채비율(GDP 대비 60%) 제한 규정에 대한 준수 의무 발생
 -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대폭적인 긴축정책을 계획(2010. 5. 23 독일 재무장관 인터뷰)
 - 그 외 주변국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자국 내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통해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등

<표 V-3> 독일 및 OECD 국가들의 재정개선 필요

국가	(단위: 잠재 GDP 대비 %)				
	2010년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A)	채무안정을 위한 적정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B)	2025년까지 재정개선 필요 ¹⁾ (C=B-A, %p)	2010~2012년 예상변동분 (추정, D)	2012년 이후 재정개선 필요 (C-D, %p)
독일	-0.7	0.8	1.6	1.1	0.5
OECD전체	-4.1	1.3	5.3	2.2	3.2
유로지역	-1.4	1	2.5	2	0.5
한국	1	-3.3	-4.3	1.2	-5.5

주: 1) 재정개선 필요: 202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개선폭 (장기 baseline 시나리오 및 완만한 속도의 재정건전화를 가정)

1.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No. 88, 2010. 11. 18)는 2025년까지 국가채무 안정을 위해 독일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를 잠재 GDP 대비 1.6%p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재정건전화 정책의 진행과정) SGP에 따라 2011년 이후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재정안정화프로그램 수립(2009년 2월 13일) 및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2010~2014년도 중기재정계획 및 2011년 긴축예산안 발표 및 확정

- SGP는 EU 회원국들이 명목목표(GDP 대비 재정적자 3%, GDP 대비 국가채무 60%) 및 중기재정목표(구조적 재정수지 -1%~흑자 유지) 달성 여부와 향후 달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
- 구조적 재정적자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5억유로씩 감소시켜 2016년에 GDP 대비 0.35% 이내로 달성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신규부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추진

□ (재정의 지속가능성 메커니즘) 독일정부가 SGP 규정에 기초하여 마련한 헌법상 재정준칙의 핵심은 ‘채무제한규정(debt brake rule)’으로,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2010~2014년도 중기재정계획 및 2011년 긴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화 달성 계획

- SGP 규정에 따르기 위해, 독일정부는 2011년 이후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재정안정화프로그램을 수립하고(2009년 2월 13일),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 재정준칙 마련
- 개정된 헌법상 ‘채무제한규정(debt brake rule)’에는 정부의 구조적 부채규모를 낮추고 경기변동 등에 의한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해, 중장기적인 공공부채 감축 및 지속가능한 재정의 메커니즘을 구축
 - 비경기적 요인에 의한 구조적 차입규모는 GDP 대비 0.3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경기적 요인에 의한 부분은 경기침체(호황)기에 따라 차입규모가 증가(감소 또는 흑자)할 수 있음
 - 금융거래(민영화)에 의한 조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
 - 예산상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 통제계정(control account)을 통해 관리되며, 이 계정의 잔고는 GDP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또한 GDP의 1%를 초과 시 경제상황을 고려한 감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재정정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 안정화 위원회가 설치되어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위기수준이라 판단되는 경우 재건 프로그램(restructuring programme)을 실시

- 독일정부는 헌법상의 재정준칙(채무제한규정(debt brake rule))을 준수하기 위하여 2010~2014년도 중기재정계획 및 2011년 긴축예산안 마련 및 각종 세제개편 실시
 - 은행세 도입 및 은행구조조정법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위험을 낮추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안
 - 재정건전화 계획상 각종 신설된 세제와 2011년 예산상 복지지출 삭감 정책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독일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 중, 은행세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법, 적자 감축을 위한 중기 재정계획(2010~2014) 및 2011년도 긴축예산안 등에서의 항공세, 핵연료세 신설 등은 단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인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각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2)항에서 기술)

2)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독일정부는 새로운 은행세(bank levy)를 도입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위험 및 실물경제와 금융기관 간 상호의존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교훈으로 은행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
 -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 위험을 줄이고 금융부문의 책임성 강화 목적
 - 부과세율은 금융기관의 규모 및 다른 금융시장 참여자와의 상호관련성에 따라 연간 수익의 약 5~15%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 연간 약 10억유로의 재정수입의 증대를 기대

- 확보된 수입은 연방금융시장안정화펀드(Federal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SMA)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며, 위기시 부실 은행의 구제와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사용
- 정부는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은행세 입법을 추진할 방침

□ 독일정부, 금융기관 구조조정법안(bank-restructuring bill) 제출(2010. 7. 13)

-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형은행 또는 다른 시장 참여자와 연관성 높은 금융기관의 도산 시 금융시장 전체에 큰 충격이 촉발될 수 있음을 인식
 -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같은 기존의 법률상 감독 수단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또 정부구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비용 전가
-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다음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기관 구조조정법 발표(2010. 7. 13)
 -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2단계의 명확한 절차 정립
 - 1단계(Informal out-of-court restructuring): 문제상황이 극복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 규제 등 다양한 비공식적 법정 외 수단을 통한 정부의 조기 개입 가능
 - 2단계(reorganisation): 금융기관 도산 및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상황인 경우, 현행보다 더 신속하고, 법적인 보호가 제한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채무자들의 권리 침해됨을 감안하여 이러한 절차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만 적용
 - 감독 수단 강화: 위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BaFin(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연방금융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독일정부를 대신하여 위기 시 금융기관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음 (예: 주요사업 매각 명령)

- 은행세(bank levy): 금융기관이 향후 위기발생 시 비용을 분담하게 하기 위한 은행세 도입 및 금융시장안정화펀드 마련
- 금융시장 안정화기관의 새로운 역할: 금융시장안정화펀드의 운용은 물론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책임을 부과

□ 독일 내각은 글로벌 금융위기 조치로 정부가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 자산에 대한 출구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2010년 6월), 2011년 2월 15일 위원회에서 보고서 발표

- 위원회의 역할은 법적 상황(특히 유럽위원회(EC)의 법적 지원조건), 국제금융시장의 발전, 독일 자본시장에의 영향 및 자본시장 안정성, 안정화정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출구전략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전문가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

□ 독일정부는 적자감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2010~2014년) 및 2011년도 긴축예산안을 발표 (2010년 7월 7일)

- 중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준칙 및 재정안정화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총 817억유로(2010년 GDP의 약 3.4%) 절감 계획
 - 총 절감액 중 세입증대는 약 35.1%인 287억유로에 해당
- 세입증대 측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 건설 시 핵연료세 부과, 항공세 및 금융거래세 신설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계획
 - 원전 가동시한 연장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전력회사들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 2011년부터 핵발전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에 매년 23억유로씩 징수
 - 2011년부터 독일 국내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항공세를 부과, 이를 통해 약 매년 10억유로의 세원확보 예상
 - 에너지산업에 대한 세금감면조치 중단으로 인해 2011년 10억유로, 2012년 이후 매년 15억유로의 예산이 감축될 예정

- 이미 승인된 은행세에 더해 일종의 ‘토빈세’ 형태의 금융거래세를 신설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식거래나 파생상품 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 부과를 고려

□ 독일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 및 재정건전화계획(consolidation package)을 위해 수반되는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함(2010년 9월)

- 예산지원법(Haushaltsbegleitgesetz 2011)안은 신설될 항공세의 근거법률인 항공교통통제법 제정과 에너지세법 등 20개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포괄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시 2011년에 35억 6백만유로의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확보됨
- 기타 핵연료세와 금융시장거래세, 그 밖에 행정상의 경비 절감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예상
- 각 법안이 예산에 미칠 영향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1년 총 112억 6백만유로의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표 V-4> 재정건전화계획의 개요: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액 추이

(단위: 백만유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지원법	3,506	5,390	5,680	4,810
항공교통통제법 제정	1,000	1,000	1,000	1,000
에너지세-전력법 개정	1,340	1,160	1,500	1,500
파산법 개정	191	215	215	215
양육수당 개정	605	605	595	575
기타	370	2,410	2,370	1,520
핵연료세	2,300	2,300	2,300	2,300
금융시장거래세	-	2,000	2,000	2,000
기타 행정경비 절감	5,400	8,900	13,600	17,400
총계	11,206	18,580	23,580	26,510

주: 연방정부만을 포함한 내역
 자료: 독일 재무부, Übersicht Umsetzung Zukunftspaket (2010. 09.)

□ 항공교통통제법의 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내 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과세하는 항공세(aviation tax) 신설

- 2010년 9월 1일 이후 예약한 항공편에 적용되며, 최종 도착지를 기준으로 운항 구간(거리)별 차등과세 방식 채택
 - 2,500km 이내는 8유로, 2,500~6,000km는 25유로, 6,000km 이상인 경우 45유로를 부과
 - 2세 미만 유아와 육상 교통편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인 경우, 기타 외교, 국방, 의료 목적의 이용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간접세 방식으로 항공사에 부과할 예정이나, 소비자에 전가되어 항공권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

□ 독일 내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절감 및 재생을 목표로 핵연료 소비에 과세하는 핵연료세제를 채택

-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확대, 전력망의 현대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목표를 포함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념을 승인하고,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핵연료세법(Kernbrennstoffsteuergesetz)안을 마련함
 -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하여, 기존 17개 원자로의 평균수명을 12년(2036년까지) 연장하기로 함
- 독일정부가 원전회사로부터 징수하는 핵연료세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수입은 매년 23억유로로 예상

<표 V-5> 중기재정계획상 적자감축내역

(단위: 억유로)

연도		2011	2012	2013	2014	누계		(비중, %)	
감축액 총계		112	192	237	276	817		100.0	
세입 증대	감면축소	20	25	25	25	95	287	11.6	35.1
	환경세 등 신설	33	53	53	53	192		23.5	

자료: 독일 재무부

<표 V-6>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 세입 측면

구분	주요 내용
감면 축소	- 에너지 관련 세제혜택 축소 (2011년 10억유로, 2012년 이후 매년 15억유로) - 항공여행 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 인상(매년 10억유로)
환경세 등 신설	- 원자력 발전 건설시 환경세 신설(매년 32억유로) - 금융거래세 신설(2012년 이후 매년 20억유로)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세출 측면의 재정건전화 방안 중, 헌법상 재정준칙 도입, 적자 감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2010~2014) 및 2011년도 건축예산안상의 복지지출(실업급여, 연금 등) 삭감, 공무원 및 군 인력 감축 등은 단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인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각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2)항에서 기술)

2)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헌법(독일기본법: Grundgesetz) 개정 및 헌법상 재정준칙 도입 (2009년 6월)
 - (배경)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재정악화, 기존 준칙의 한계 및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헌법 개정 및 헌법상 재정준칙 마련
 - (진행과정) 독일 내각에서 2009년 3월 11일 헌법개정안 제출, 2009년 5월 29일 하원 통과, 2009년 6월 12일 상원 통과 및 확정, 2011년 발효
 - (주요내용)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주정부는 2020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며(재정수지 준칙),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을 고려한 공공재정 계획 수립 등

-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35% 이하로 억제하고, 초과 시¹³⁾ 차액은 통제계정(control/equalization account)에서 보관해야 하며, 이 계정의 규모는 GDP 대비 1.5%를 상회할 수 없음
- 연방정부와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방정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연간 8억 유로의 보조금 지급
- 독일정부는 재정준칙을 안정화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 및 2011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지출감축 중심의 긴축예산안을 발표

※ 독일 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독일은 재정건전화 및 연방·주·지방정부의 재정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독일 헌법인 기본법(Basic Law-Grundgesetz)을 2009년 7월 개정
 - 제109조(연방 및 지방의 예산운용)의 추가내용 : “연방 및 지방정부의 예산은 차입을 통하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단, 경기침체 시 경제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는 차입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 및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차입을 늘릴 수 있다. 중기 균형재정의 달성을 위해 연방은 연간 차입규모를 GDP 대비 0.3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제115조(차입)의 추가내용 : “실질차입 규모가 허용되는 차입규모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통제계정(control account 또는 equalization account)에서 관리될 것이며 이 계정의 잔고는 GDP의 1.5%를 넘을 수 없다. 이 계정의 잔액이 GDP의 1%를 넘을 경우에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 제143d조 : “기본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신규규정은 2011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주정부는 2020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
 - 제109a조(안정화 위원회) :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정화 위원회(Stability Council)가 설립되며, 이를 통해 연방 및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관리되고, 이들 정부의 재정상황은 매년 검토 및 보고되어야 하며 안정화 위원회의 결정사안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13) 예외는 자연재해 및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국회 2/3의 동의를 얻은 경우

□ SGP 및 개정된 헌법에 따른 재정안정화위원회(Stability Council) 설치 및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 발표(2010년 2월 9일)

- (배경) SGP에서 EU 회원국들이 유럽 경제금융이사회(ECOFIN)에 매년 명목목표(GDP 대비 재정적자 3%, GDP 대비 국가채무 60%) 및 중기재정목표(구조적 재정수지 -1%~흑자 유지) 달성 여부와 향후 달성 계획(유로회원국: Stability Programme, 비유로회원국: Convergence Programme)을 제출하도록 규정
- SGP에 따라 개정된 헌법 제109a조에 근거하여, 재무부 장관, 경제기술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안정화 위원회(Stability Council)를 설치하여 향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발표 및 논의
- (주요내용) 2010년 당시 GDP 대비 5.1%인(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를 2013년까지 3%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헌법상 재정준칙 조항에 맞추어 2016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0.3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대적인 긴축정책 계획
 - 2016년까지 매년 100억유로 이상 감축 예정
 - 세금인상과 지출감축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주정부 보조금 삭감, 수당 및 면세 폐지 등이 우선 시행 대상

□ 독일정부는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중기재정계획(2010~2014년) 및 2011년도 긴축예산안을 발표(2010년 7월 7일)

- 중기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준칙 및 재정안정화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총 817억유로(2010년 GDP의 약 3.4%) 절감 계획
 - 총 절감액 중 지출감축에 해당하는 액수는 64.9%인 531억유로
- 2011년 재정지출 규모는 2010년 3,195억유로에서 3,074억유로로 3.8% 축소
 - 정부는 2012년에는 재정지출을 3,010억유로까지 줄인 뒤 2014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계획
 -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1년 -3.8%에서 2012년 -2.1%, 2014년 -0.1%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할 계획

- 2011년 예산안의 세출 감소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감축이 4년간 총 303억유로(총적자감축 규모의 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생활보호대상자(Hartz IV)에게 지불되던 연금이 삭감됨에 따라 매년 약 20억유로의 절감
 - 육아수당의 단계적 감축: 최대 14개월간 300유로가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폐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혜택을 축소
 - 장기 실업수당 혜택 축소: 실업상태에서의 창업보조금을 폐지하고, 실업자수당 I에서 II로 넘어가는 과도기 수당 폐지

<표 V-7> 중기재정계획(2010~2014)

(단위: 십억유로)

	2009	2010 (당초)	2010 (수정)	2011 예산안	Financial plan		
					2012	2013	2014
기존 재정지출 계획				326.0	329.4	332.0	(332.0)
재정지출	292.3	319.5	-	307.4	301.0	301.5	301.1
전년 대비 증가율(%)				-3.8%	-2.1%	+0.2%	-0.1%
2010~2014년 연간변동률					-1.5%		
조세수입	227.8	211.9	-	221.8	232.8	241.8	250.3
세외수입	30.2	27.4	-	28.1	28.1	28.1	26.7
신규차입	34.1	80.2	65.2	57.5	40.1	31.6	24.1
재정적자 (GDP 대비 %)		66.6 (2.8%)	53.2 (2.2%)	45.8 (1.9%)	39.0 (1.6%)	32.1 (1.3%)	25.1 (1.0%)

자료: 독일 재무부, 2010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추진중이던 사업을 중단 및 축소하고, 인력 감축 및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해 추진 예정
 - 5억 5천만유로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왕궁 복원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을 2014년으로 연기

- 공무원 1만 5천명 정원감축 및 2011년 연말보너스 동결
 -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월급 2.5% 인하를 통해 매년 40억유로 절감 예정
- 2014년까지 내무부를 비롯한 정부 각처의 불필요한 관직을 10,000~15,000개 축소할 계획
- 기타 국방 분야에서 9월 초까지 현 25만명의 연방군(Bundeswehr) 중 4만명을 축소할 예정이며 군복무 기간은 계획대로 6개월로 단축

<표 V-8> 중기재정계획상 적자감축내역

(단위: 억유로)

구분		2011	2012	2013	2014	누계	(비중, %)	
계		112	192	237	276	817	100.0	
지출 감축	복지	30	70	94	109	303	37.1	64.9
	일반 행정	23	33	39	39	134	16.4	
	기타(국방)	6	11	27	50	94	11.5	

자료: 독일 재무부, 2010

<표 V-9>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 세출 측면

구분	주요 내용
지출감축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를 법정(의무)지출에서 연방노동국 재량지출로 전환 - 실업급여 수혜자 중 노령연금 이중수혜 일부 폐지¹⁾ - 노령연금 수혜자 중 월 1,240~1,800유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축소(소득대체율 67→65%)
	일반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인건비 절감 및 인력 감축
	기타(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여 명의 군 인력 감축 - 이자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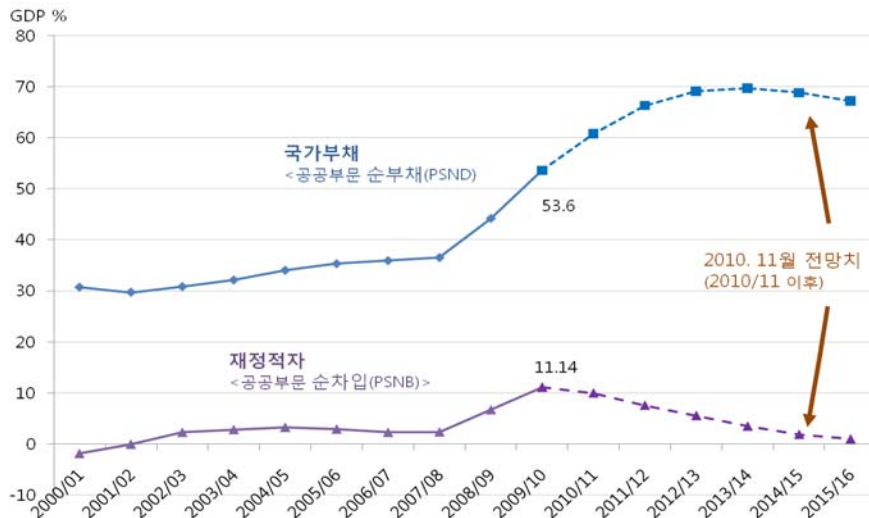
주: 1) 독일의 실업보험은 보험료로 충당하는 사회보험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보조로 구성되며, 이 중 사회보조 수혜자의 노령연금 이중수혜 일부를 폐지
 자료: 독일 재무부, 2010

VI. 영 국

1. 재정추이

- FY2007/08까지는 재정적자 규모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 및 부채 규모가 급속히 증가
 - FY2000/01에 재정흑자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FY2009/10에 적자규모가 GDP의 11.1%를 기록
 - FY2010/11 이후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부채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중
 - FY2009/10 국가부채 규모는 GDP 대비 53.6%이며 FY2013/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림 VI-1] 영국 재정추이 및 전망



주: PSNB와 PSND는 한시적인 금융개입 효과 제외한 지표임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 2010. 12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11

2. 재정건전화 방안

- 사상 최대의 재정악화 상태에서 2010년 5월 총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보수-자민 연립 정부가 집권하면서 세입 인상보다 지출 감축에 중점을 둔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 노동당 정부는 2008년 이후 경기부양대책과 함께 선별적 증세를 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10년 3월 예산안에서는 FY2010/11~FY2014/15까지 세입인상 총 190억파운드, 지출삭감 총 380억파운드를 계획
 - 연립정부가 집권 직후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서 FY2014/15에 연간 400억파운드(세입 80억파운드 인상, 지출 320억파운드 감축)의 재정확보를 계획
 - 중기재정계획(2010. 10)에서 7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지출을 추가로 삭감하여 연간 총 180억파운드의 복지삭감 추진중

- 또한 2008년 한시적 재정준칙을 채택하여 일시적 재정준칙 이탈을 허용하고, 2010년 초 재정책임법 제정, 2010년 재정건전화목표 설정으로 총량적 재정통제 강화
 - 2008년 경기침체로 재정준칙(fiscal rule)을 이탈하게 되자 영국 정부는 사전예산안 2008(2008년 11월)에서 한시적 재정준칙을 채택
 - 중기적인 재정안정성에 대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전제하에서 공공부문 부채 기준의 일시적 이탈을 허용
 -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을 통해 적자감축 목표 구체화
 - GDP 대비 적자규모가 FY2013/14에 5.5% 이하로 감소시킴
 - GDP 대비 부채규모는 FY2015/16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도록 함
 - 2010년 총선 이후 집권한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이전 정부의 재정책임법을 폐기하고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설정
 - FY2015/16 이내에 경기변동을 조정한 경상수지의 균형 달성 및 부채규모 감축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인상 등 세입 확보를 통한 재원확대 방안을 꾸준히 추진
 - 경기부양을 위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종료와 유류세, 주세 등 일부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고위험 투자에 대응한 은행세 등을 새로 도입하고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지속적 대책 수립
 - 경기침체로 세율 인상 시점을 연기해 온 법인세의 경우는 정권교체 이후 인하 방침으로 전환

- 세입확보 계획 중 특히 사회보장 재원 확대를 위한 국민보험기여금(NICs) 인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영구세로 도입된 은행세와 세금탈루 방지 대책의 경우도 단기간의 대책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소득세 인상) FY2010/11부터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 소득세율 50%를 적용하고 연금기여금 소득공제율을 20%까지 제한
 - 2008년 11월 사전예산안에서 처음으로 제안하고 2010년 4월 연간 재정법으로 최종 승인
 - 그러나 정권교체 후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공제 제한 규정은 폐지됨

- (VAT 인상) FY2010-11에 약 29억파운드, FY2014/15에 약 135억파운드 확보 예상
 - 현 정부는 집권 후 첫 번째 예산안에서 부가가치세율을 20%로 인상(2011. 1. 4부터 효력 발생)
 - 세입확보를 통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인상 효과임
 - 2010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를 종료하고 17.5%로 환원 (2010년 3월 예산안)

- (기타 간접세) 2010년부터 물가상승을 초과하여 연료세 리터당 2.76펜스, 주류세 2~10%, 담배세 1% 인상
 - 담배세의 경우 세율 인상으로 3,500만파운드 세입 증가 예상
 - 소득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2008년 11월 사전예산안에서 제안하고 2010년 4월 연간 재정법으로 최종 승인

- 보험료세(Insurance Premium Tax) 및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인상으로 FY2014/15에 약 14억파운드 확보(긴급예산안, 2010. 6)
 - (보험료세) 2011. 1. 4부터 표준세율은 5%에서 6%로 인상하고 고세율은 17.5%에서 20%로 인상
 - FY2010/11에 약 1억파운드, FY2011/12이후는 약 5억파운드 규모로 예상
 - (자본이득세) 2010. 6. 23부터 자본이득세 고세율을 10%p 인상, 28% 세율 적용
 - FY2011/12에 약 7억파운드, FY2014/15에 약 9억파운드 확보

- (자산매각) 재정확보를 위해 2년에 걸쳐 총 160억파운드의 정부자산매각 결정(총리실 발표, 2009년 10월)
 - 160억파운드 중 30억파운드가량 자산이 1차 매각 대상에 포함됨
 - CTRL(Channel Tunnel rail link), 우라늄농축컨소시엄 유렌코(URENCO) 정부지분 33% 등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사회보장세) FY2011/12부터 국민보험기여금(NICs) 0.1%p 인상
 - 경기회복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FY2011/12부터 국민보험기여금을 0.5%p 인상(사전예산안 2008년 11월)
 - 사전예산안 2009에서 0.5%p를 추가하여 총 0.1%p 인상함

□ (은행세) 은행세(Bank Levy) 도입으로 연간 25억파운드 규모 확보 예상

- 12월 발표한 Finance Bill 2011 초안에서 은행세율을 2011년 0.05%, 2012년 이후 0.075%로 확정하였으나 2011. 2. 8에 2011년 은행세율을 2012년 이후 세율과 동일하게 변경함
 - 은행세 제안 당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려했던 경과조치 기간이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
 - 기발생된 효력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2011. 3. 1~2011. 4. 30까지 세율을 0.1%로 조정하고 2011. 5. 1 이후는 0.075% 세율 적용
- 세율 변경에 따라 2011년 은행세입은 변경 전보다 8억파운드 증가한 25억파운드로 전망됨
- 은행세는 2010년 6월 발표한 긴급예산안에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Finance Bill 2011 초안에서 확정된 세율은 당시 정부안보다 각각 0.01%p, 0.005%p 인상

□ (조세회피 방지) 조세회피 방지대책에 대한 법률 정비로 향후 4년간 50억파운드 확보 가능

- 2010년 12월, 세금계산서를 줄이기 위한 계열사 간 대출 및 파생상품 거래 제한 등 즉시 발효되는 일부 조항을 포함하여 조세회피 방지대책 관련 법률 정비
- 현 정부는 집권 후 노동당 정부의 계획 중 일부를 수용하고 입법화를 추진
 - 연정 협약 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에 합의하고 긴급예산안(2010. 6)에서 인 지세 감면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정책 보완 등 입법화 추진 발표
 - 해외탈루 방지, 은행과세지침 마련 등 조세회피 방지대책은 노동당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임
- : 총선 전 발표된 예산안(2010. 3)에서는 조세회피방지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15억 파운드 확보, 기타 대책으로 추가 40억파운드 확보 예상
- 영국 국세청(HMRC)에 조세회피 방지대책을 위한 재원 9억파운드를 추가 배정하여 FY2014/15까지 연간 70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세입 확보 전망(2010. 9)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 공공부문 개혁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삭감 등 악화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출감축 추진

- 2010년 3월 노동당 정부는 4년간 총 380억파운드의 지출삭감 계획 발표
- 이후 집권한 연립정부는 5년간 총 870억파운드 규모로 지출감축 확대

(단위: 백만파운드)

(2010년 6월 예산안)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지출감축 규모	+5,245	+8,855	+17,300	+23,820	+31,940
中 복지 감축 규모	+385	+2,010	+4,710	+8,150	+11,040

□ 재정건전화 목표 설정 등 총량적 통제 외에도 복지지출 삭감과 복지제도 개혁 등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대규모 복지지출 삭감을 단행하고 복지급여 상한(Benefit Cap) 설정, 복지급여 단일화(Universal Credit)를 비롯한 복지제도 개혁에 착수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공공부문 개혁) 공공부문 임금동결, 정부효율성 강화를 통한 지출 절감, 인력 감축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

-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및 공공부문 연금개혁 등 FY2012-13까지 공공부문에서 200억파운드 삭감 계획(2010년 3월 예산안)
 - FY2011-12, FY2012-13 공공부문의 임금상승률을 1% 이하로 통제하여 연간 34억파운드의 지출 억제
 - 5년 이내에 공무원(런던) 15,000명 인원 감축

- FY2012-13까지 공공부문 및 중앙정부 효율화로 110억파운드 절감 목표 계획 (2010년 3월 예산안)
 - 80억파운드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 30억파운드는 컨설팅, 홍보, IT 프로젝트, 공공부문임금 삭감과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달성
 - 정부부처 효율화 목표: 아동·학교·가족부 6억 5천만파운드, 국방부 5억 5천만 파운드, 국세청 2억 3,600만파운드, 노동·연금부 4천만파운드 등
- 일반정부의 공공서비스 인력을 33만명 감축 전망
 - 긴급예산안(2010. 6)에서는 약 49만명의 공공인력을 감축할 전망하였으나 2010년 11월 재무장관의 가을성명(Autumn Statement)에서 약 33만명으로 축소 전망
- 연정합의 직후 각료 및 고위 공무원 임금삭감 발표
 - 각료 보수 삭감으로 의회 임기 중 총 300만파운드 절감 예상
 - 고위공무원 보수관련 FY2010/11 예산 약 1,500만파운드 삭감
- 연소득 21,000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을 2년간 동결 (2010년 6월 예산안)

□ (사업예산 삭감) 핵심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후순위 사업,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사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출 삭감

- 정책우선도가 낮은 사업 중 50억파운드 규모의 지출 삭감(2010년 3월 예산안)
 - 지역개발청 3억파운드, 아동·학교·가족부(DCSF) 3억 5천만파운드, 지역사회부(CLG) 1억 6천만파운드 삭감
 - 사법제도 및 법률구조 개혁 3억 6천만파운드, 주택정책 3억 4천만파운드, 교통할인(노인, 장애인 등)제도 개선 1억 8천만파운드, 해외출장비 등 공무원수당 삭감 및 폐지 1,300만파운드, 주택급여 3,500만파운드 등 삭감
- 총선 후 연정합의 과정에서 FY2010-11 비일선 서비스 예산 60억파운드 삭감과 아동신탁기금(CTF) 정부보조 중단에 합의
- 연정합의 후 첫 번째 재정건전화 조치로 62억파운드 규모의 지출을 삭감하고 사업 평가(value for money) 결과를 토대로 저효율 사업은 취소 또는 연기

- 약 62억파운드의 지출을 삭감하되, 핵심 공공서비스는 보장
 - : 정부조달사업 계획 조정 등 계약의 연기 및 중단(17억파운드), 정부 컨설팅 및 홍보 비용(11억 5천만파운드), 독립 공공기관 비용(6억파운드), 부동산 비용 삭감(1억 7천만파운드) 등
 - : 학교, Sure Start, 16~19세 대상 교육지출은 지출삭감에서 제외
 - : 62억파운드 중 5억파운드는 직업기술교육, 공공주택 등에 재투자 가능
- VfM(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
 - : 약 20억파운드의 12개 사업 예산삭감, 약 85억파운드 규모의 12개 사업 보류
 - : 20억파운드 중 약 3억 7천만파운드는 5월 발표한 62억파운드 긴축안에 포함
-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FY2010-11 지출 중 최소 10억파운드 삭감 계획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복지지출 삭감) FY2014-15에 연간 18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지출 감축을 시도
 - 2010년 3월 예산안에서 노동당 정부는 근로유인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복지제도 개혁으로 향후 5년간 총 12억파운드 절감 계획
 - 긴급예산안에서 발표한 연간 320억파운드 규모의 지출삭감 중 복지지출 감축 규모는 연간 110억파운드에 달함
 - 2011년부터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공공서비스연금의 급여인상 물가연동 기준을 소매물가지수(RPI)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변경
 -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 2010)에서 추가로 연간 7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지출 삭감
 - 고용지원수당 축소, 근로세액공제 동결, 자녀급여(Child Benefit) 동결 등
 - 중기재정계획의 복지지출 삭감 내용 및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개혁안	세부내용	삭감규모
고용지원수당 (Employment Support Allowance: ESA)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RAG(Work Related Activity Group)에 포함되는 경우 ESA를 1년간으로 제한 ▪ 약 1백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ESA는 장애나 건강상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주 91~97파운드 지급 	FY2014-15 기준 연간 20억파운드
가구당 복지급여 한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전쟁미망인연금(War Widow Pension), 일회성 급여는 제외 	FY2014-15 기준 연간 2억 7천만파운드
고세율납세자 자녀급여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가구소득 기준 43,875파운드 이상 	FY2014-15 기준 연간 25억파운드
근로세액공제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4월부터 근로세액공제 기본 요소(basic elements) 와 30시간 요소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분만 적용 ▪ 현재 기본요소는 연간 1,920파운드, 30시간 요소는 연간 790파운드임 	FY2014-15 기준 연간 6억 2,500만파운드
근로세액공제 자격조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4월부터 2자녀 이상의 부부의 근로세액공제 자격조건에 부부합계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추가 ▪ 현행: 부부 중 1인의 근로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FY2014-15 기준 연간 3억 9천만파운드
근로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4월부터 근로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는 비용의 80%에서 70%로 삭감 	FY2014-15 기준 연간 3억 8,500만파운드
지역주거수당에서 Shared Room Rate 연령제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Shared Room Rate는 지역주거수당 규칙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는 25세 미만의 독신에 대해 적용 ▪ 연령제한을 3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비율을 적용 ▪ 중증장애 요건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되며, 연령제한 확대 조치는 총 88,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FY2014-15 기준 연간 2억 1,500만파운드
장애생활수당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2-13부터 요양시설 수급자의 장애생활수당 중 이동편의서비스 요소 부분 지급 중지 ▪ 자가거주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약 58,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FY2014-15 기준 연간 1억 3,500만파운드

지방세보조급여 삭감 및 지방부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3-14부터 지방세보조급여(Council Tax Benefit)를 최대 10% 삭감하고 지방정부 및 권한이양 행정부에 급여지급에 대한 자율성 부여 	FY2014-15부터 연간 4억 9천만파운드
연금공제에서 연령가산부분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금에 추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연령가산(Saving Credit) 한도를 2015년까지 동결 ▪ 최대한도는 독신 20.52파운드, 부부 27.09파운드로 약 180만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FY2014-15 기준 연간 3억 3천만파운드

□ (복지제도 개혁) 급여상한 설정, 급여제도 간소화, 연금 및 의료부문 제도 개혁 등 장기적 대책 마련

- 2013년부터 가구 기준으로 총사회보장급여의 상한(Benefit Cap) 설정
 - 비근로가구의 복지급여가 평균가구소득을 상회하지 않도록 근로가구의 세후(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한액 설정
 - 2013년 부부 혹은 한부모 가구의 평균소득은 주당 506파운드, 독신가구는 주당 350파운드 정도로 예상됨
 - 상한 설정 대상 급여는 주요 소득대체 급여인 소득보조,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과 기타 자산조사 급여인 주거급여, 지방세급여, 그 외 자녀수당 및 자녀세액공제, 간호인수당, 산재장애급여 등
 - 무상급식 등 일회성 급여, 비현금 급여, 전쟁미망인, 장애생활수당 및 근로세액공제 수급가구는 상한 적용에서 제외
- 2013년부터 복잡한 사회보장급여를 Universal Credit으로 전환
 - 현재 지방정부, Job centre Plus 등 여러 곳에서 주관하는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 단일화
 - 기여형 구직자수당(Contributory Jobseeker's Allowance), 자녀급여, 장애생활수당 등의 비자산조사 급여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현행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신고에 따른 재정 상황에 의존하고 있어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Universal Credit 전환과 함께 사회보장급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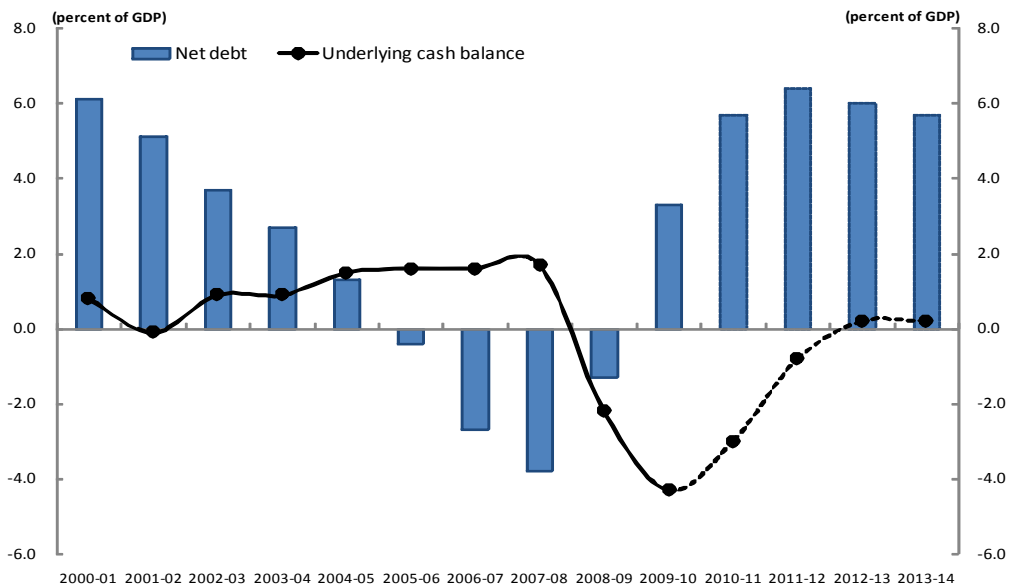
- NHS 효율화 프로그램(Quality, Innovation, Productivity & Prevention)을 통해 FY2011-12~FY2014-15까지 연간 200억파운드의 지출절감 목표 설정
 -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 발표한 암환자 1:1 간호 등 일부 정책은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연기
- 2013년까지 1차 진료기관(Primary Care Trusts)과 전략 의료기관(Strategic Health Authorities)을 폐지
 - NHS 관리구조의 단일화, 비용절감 및 일선 의료인력 역량 강화 도모
 -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18개 중앙정부부처 산하 의료기관(Arms Length Bodies)을 2013년까지 10개로 축소
- 기초국가연금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20년 기준 66세로 상향 조정
 - 2015~2025년까지 약 300억파운드의 지출 절감 기대

Ⅶ. 호 주

1. 재정추이

- 호주는 200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예산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의 여파로 FY2008-09부터 예산흑자 달성에 실패
 - 경기여건 악화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고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FY2008-09 예산수지는 전년 대비 3.9%p 감소(FY2007-08: 1.7% → FY2008-09: Δ 2.2%)
 - FY2009-10의 예산수지는 1970년 이후 최고치인 Δ 4.3%의 적자를 기록

[그림 Ⅶ-1] 예산수지 및 순채무 추이 및 전망



주: FY2009-10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11.

2. 재정건전화 방안

- 호주는 금융위기 여파로 1970년 이후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FY2008-09 예산안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 (재정건전화 정책) 호주경제는 시기적절한 경기부양조치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FY2009-10부터 점차 긴축재정기조로 운영하는 등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
 - GDP 대비 1% 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실질지출 증가율을 2%로 제한
 -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 개선으로 인한 세입확충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
 - 최근 주정부의 홍수 피해로 연방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해복구예산 마련을 위해 한시적 특별세를 도입하고 예산감축계획 발표
 - 이와 같은 재정건전화 조치로 FY2012-13에 예산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FY2016-17에 GDP 대비 1%의 예산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을 수행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개편을 추진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노령연금지급을 위해 연금수령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연금 소득 심사를 강화
 -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퇴직연금 추가적립액 기준을 상향조정
 - 광물자원임대세의 신설로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세정책(법인세율의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재원 및 자원 분야에의 투자 등에 활용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추가적인 세입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자원세 도입, 담배소비세 인상, 한시적 특별세 도입 등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입원 발굴(FY2009-10 예산안)
 - 고소득자(25만호주달러 이상)들의 소득에 있어서 비영리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손실 부분을 공제하는 소득세법 규정 강화
 - (현행) 고소득자가 비영리사업 활동으로 인해 소득손실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소득에서 손실된 소득 금액만큼 공제
 - (개정) 비영리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음
 - 동 제도는 FY2009-10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7억호주달러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측
 - 호주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foreign employment income)에 대해 과세
 - (현행) 원천지 국가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은 호주 소득세에서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개정)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 호주정부가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호주달러로 환산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해외구호활동 및 해외 과세당국에서 과세면제하고 있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세 면제
 - 동 제도는 FY2009-10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6억 7,500만호주달러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측

- 연구개발비(R&D)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FY2010-11부터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
 - (현행)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125%를 소득공제하고, 과거 3년 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법인의 경우 150%의 소득공제 적용
 - (개정) 매출액 2천만호주달러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R&D 지출액의 45%에 상당하는 환급가능 세액공제가 적용(이는 150%의 소득공제 효과와 동일)되고, 2천만호주달러 이상인 법인은 R&D 지출액의 40%에 상당하는 환급 불가능 세액공제가 적용(이는 133%의 소득공제 효과와 동일)
 - 동 제도로 향후 3년에 걸쳐 8억 5,500만호주달러 수준의 세수 증대 예측

□ 수해로 인해 FY2012-13의 예산흑자 달성 목표가 어려워지자 호주정부는 한시적 특별세(Temporary Flood Replacement Levy) 도입을 추진(2011. 2. 10)

- 수해지역의 재건을 위해 FY2011-12 동안 호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소득세의 형태의 특별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하원에 상정(2011. 2. 24 하원 통과)
- 특별세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연간 5만~10만호주달러 소득자의 경우, 5만호주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0.5% 부과
 - 연간 10만호주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과세소득에 1% 부과
 - 홍수피해가구와 연소득 5만호주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동 특별세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현행 의료비 세금(Medicare levy)에 추가되는 방식임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천연자원 생산기업에 대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자원세제 도입(FY2010-11 예산안)

- FY2003-04 이후로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의 자원수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

- 업의 세부담액에 큰 변화가 없어 공정한 세금 부과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
- FY2012-13부터 석탄과 철광석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30%의 세율로 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 Rent Tax)를 부과
- 동 세제 도입으로 인한 조세수입은 자원분야에의 환원 및 FY2010-11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조세정책 재원으로 활용

<참고 1> 자원세제 도입 배경 및 변화 추이

- 호주정부는 FY2010-11 예산안을 통해 천연자원 생산기업에 대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자원초과이익세(Resource Super Profit Tax) 도입을 발표
 - 2012년 7월 1일부터 석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가 적용되는 해상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제외한 모든 자원·에너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발생된 수익에 40%의 세율로 세금 부과
 - 연방정부의 자원 관련 세금(crude oil excise tax)은 자원초과이익세로 통합되나,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로열티는 지속
 - 자원초과이익세의 도입으로 인해 FY2013-14까지 추가로 120억호주달러 수준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자원초과이익세 도입 발표 후 광산업계의 반발이 심하여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자 2010년 7월 기존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해 기업들과의 협상 타결에 성공
 - 세금의 명칭을 자원초과이익세에서 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 Rent Tax)로 변경
 - 광물자원임대세는 석탄과 철광석 개발사업으로 국한시켜 적용하여 기존 적용대상기업 2500개에서 320개로 대폭 축소
 - 석유자원임대세를 확장하여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 석유·가스개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적용세율도 기존 40%에서 30%로 10%p 세율 인하

- 또한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률 보장도 확대하여 수익률의 12.7%(기존보다 7% 추가 인정)까지 광물자원임대세를 과세 면세함
- 수정된 자원세제개혁에 따라 기존 전망치에 비해 15억호주달러 정도 세입이 줄어들 전망으로 동 재원으로 추진될 기타 세제개혁도 수정이 불가피
- 법인세율 인하폭 수정: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FY2012-13부터 2%p 인하한 28%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자원세제 수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1%p 인하된 세율 적용

- 흡연인구를 줄이고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 담배소비세(tobacco excise tax) 인상 (FY2010-11 예산안)
 - 2010년 4월 30일부터 담배소비세를 25% 인상,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약 50억호주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의료 및 보건개혁의 재원에 충당할 계획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 GDP 대비 1%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실질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삭감(또는 폐지), 연금개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삭감 또는 폐지(FY2009-10 예산안)
 - (현행)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정부가 30~40%를 지원
 - (개정) 연간 7만 5천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독신이거나 연간 15만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환급금 삭감 대상이 됨

- 연간 12만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독신과 연간 24만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환급금 폐지
- 동 계획은 FY2010-11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19억호주달러 정도 예산을 절감

<표 VII-1>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개정 계획

	Current surcharge thresholds (projected 2010-11)	Tier 1	Tier 2	Tier 3
Singles	\$0 - \$75,000	\$75,001 - \$90,000	\$90,001 - \$120,000	\$120,001+
Families	\$0 - \$150,000	\$150,001 - \$180,000	\$180,001 - \$240,000	\$240,001+
Medicare levy surcharge	nil	1.00%	1.25%	1.50%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				
Less than 65 years	30%	20%	10%	nil
65 to 69 years	35%	25%	15%	nil
70 years or over	40%	30%	20%	nil

자료: FY2009-10 Budget Paper No.1, 2009. 5

- GDP 대비 1% 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
 - 호주정부는 FY2009-10 예산안 발표 시부터 FY2011-12~FY2012-13의 실질지출 증가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
 - 최근에 발표한 FY2010-11반기 경제·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흑자 달성을 위해 FY2010-11 예산안보다 더 강한 재정지출 감축안을 발표

<표 VII-2>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 증가율 전망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0-11 예산안	4.9	0.9	-0.6	1.7	1.9
FY2010-11반기 경제·재정 보고서	4.9	1.5	-1.1	1.0	1.6

주: 실질지출 증가율은 현금주의 기준의 지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FY2010-11 Budget, 2010. 5
 FY2010-11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11

-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FY2008-09 및 FY2009-10에 수행했던 경기부양책을 거의 종료 (FY2010-11 예산안)
 - FY2008-09에는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및 「국가건설 및 일자리 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을 발표, 이에 더하여 FY2009-10에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를 발표하여 경제성장 제고에 주력
 - FY2010-11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지 않고 이전에 수행했던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하는 단계임

-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금융기관간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 보증 및 예금보증계획(Guarantee of Large Deposits)정책을 종료(2010. 2. 7)
 - 정부는 호주 금융권이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을 2010년 3월 31일부로 종료
 - 동 정책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호주 은행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

- 수해로 인해 FY2012-13의 예산후자 달성 목표가 어려워지자 호주정부는 약 28억호주달러규모의 연방예산 감축계획을 발표
 - 미래대비투자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재조정 및 지출 감소로 향후 4년 동안 18억호주달러 절감
 - 청정 자동차 환급 제도(Cleaner Car Rebate Scheme) 중단
 - 친환경 자동차 혁신 펀드(Green Car Innovation Fund) 폐지
 - 탄소 포집·저장 프로그램(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및 태양광 프로그램(Solar Flagships programs), 지구촌 탄소 포집·저장 연구소(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에 대한 지출 감소와 재원조달 연기

- 지역 인프라 프로그램(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및 더 나은 지역사회 건설 프로그램(Building Better Regional Cities Program)의 우선순위 재조정
 - 기타 재정지출 감소 및 시행 연기
-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연기로 향후 4년간 약 10억호주달러 절감
-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연기하여 약 10억호주달러의 수해복구재원을 마련하고, 수해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부족한 기술인력들을 보강

<참고 2> 수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연방정부의 복구예산 추산 내역 및 자원조달계획

<표 VII-3> 연방정부의 복구예산 추산 내역

(단위: 백만호주달러)

재해구호 및 복구제도(Natur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 (NDRRA))¹⁾	-4,900
--	---------------

동 제도에 호주정부는 특정 자연재해로 인한 주 및 준주의 피해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며 개인구호 및 필수적인 공공인프라 복구, 지역사회 복구 보조 등을 포함

재해복구지원금(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²⁾	-600
--	-------------

동 지원금은 사회보장법하에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호주 거주자에게 일회하여 한하여 지급되며 수령자격이 있는 자에게 성인 1명당 1,000호주달러와 (16세 미만)각 자녀당 400호주달러가 지급. 신청자는 약 4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재해로 인한 소득손실보조금(Disaster Income Recovery Subsidy)³⁾	-120
--	-------------

동 보조금은 홍수와 극심한 기후로 인해 소득 손실을 입은 고용인과 중소기업자, 농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매 2주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의 최대율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 신청자는 약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주정부의 구호기금에 대한 기부금(Donations to the State relief funds and appeals)	-12
---	------------

호주정부는 퀸즐랜드와 빅토리아 주정부의 구호기금에 약 1,200만호주달러를 기부

Total⁴⁾	-5,632
---------------------------	---------------

주: 1) 동 제도는 일차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주정부의 구호기금과 사회간접자원의 복구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주정부는 NDRRA제도를 통해서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동 지원금은 2011년 1월 10일부터 31일 사이에 호주 북동부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
 3) 동 보조금은 2010년 11월 29일을 기점으로 2010년 12월~2011년 2월까지 이어지는 홍수와 극심한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 소득을 잃은 것이 증명된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시행
 4) 전체 지원액은 1차 추정치이며 자세한 내용은 FY2011-12 예산안에 포함될 것임
 자료: www.treasurer.gov.au

<표 VII-4> 수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 조달 계획

	Impact on underlying cash balance					Total \$m
	2010-11 \$m	2011-12 \$m	2012-13 \$m	2013-14 \$m	2014-15 \$m	
Flood Levy	0	1560	235	0	0	1,795
<p>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a temporary levy on individual tax payers to raise funds for the recovery and reconstruction effort. From 1 July 2011, with effect for the 2011-12 income year only, a levy of 0.5 per cent will apply to taxable income of between \$50,001 and \$100,000 and 1.0 per cent to taxable income above \$100,000.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an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for a flood event in 2010-11 will be exempt from paying the flood levy.</p>						
Cleaner Car Rebate Scheme - not proceed	0	157	119	85	69	429
<p>The Cleaner Car Rebate Scheme was to provide grants of \$2,000 to motorists who scrap their pre-1995 passenger vehicles and purchase new, low emission, fuel efficient vehicles. The Government will not proceed with the scheme. This will provide savings of \$429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p>						
Priority 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PRIP)	0	50	125	125	50	350
<p>The \$800 million PRIP is being established to invest in projects identified by local communities in regional areas. The Government will reallocate \$350 million to support flood recovery of funding from the PRIP to support flood recovery efforts in regional Australia. This will be allocated under the NDRRA in consultation with Queensland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ies.</p>						
Capital Development Pool (CDP) - abolish from 1 January 2012	0	55	78	81	84	299
<p>The Capital Development Pool will cease funding of new projects from 1 January 2012, saving \$299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All current projects already funded under the program are unaffected.</p>						
Green Car Innovation Fund - abolition	3	16	6	26	183	234
<p>The Government will wind up the Green Car Innovation Fund from 2011-12, realising savings of \$234 million from uncommitted funds over the forward estimates and \$401 million over the life of the program. The Green Car Innovation Fund was initially established in 2008 as part of the Government's A New Car Plan for a Greener Future to assist projects aimed at producing low-emission, fuel-efficient vehicles and components.</p>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NRAS) - limit dwelling target to 35,000	9	22	63	75	96	264
<p>The Government will limit the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dwelling target to 35,000 by 2013-14 rather than 50,000, saving \$264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Priority will be given to applications from flood affected areas across Australia in allocating the remaining incentives (around 13,000),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State.</p>						
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0	110	18	0	122	250
<p>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Flagships program forms part of the Clean Energy Initiative and provides grants for projects to help accelerate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low emission coal technology by supporting industrial-scale projects in Australia. The Government will reduce its funding for the CCS flagships program by a total of \$250 million across the forward estimates period, with \$160 million of this to be re-phased to beyond the forward estimates.</p>						
Solar Flagships -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0	75	50	-50	175	250
<p>The Solar Flagships program forms part of the Clean Energy Initiative and provides grants to support the deployment of large scale solar energy generation projects in Australia. The Government will reduce its funding for the Solar Flagships program by a total of \$250 million across the forward estimates period, with \$190 million of this to be re-phased to beyond the forward estimates.</p>						

<표 VII-4>의 계속

	Impact on underlying cash balance					Total \$m
	2010-11 \$m	2011-12 \$m	2012-13 \$m	2013-14 \$m	2014-15 \$m	
Renewable Energy Bonus Scheme - Solar Hot Water Rebate- capping funding	81	78	0	0	0	160
<p>The Renewable Energy Bonus Scheme – Solar Hot Water Rebate provides a rebate of \$1,000 for a solar hot water system or \$600 for a heat pump hot water system and is available to help eligible home-owners, landlords or tenants to replace their electric storage hot water systems. The Government will cap funding from this program resulting in a saving of \$160 million over two years.</p>						
Green Start Program- not proceeding with Round 2	88	41	1	0	0	129
<p>On 21 December 2010,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losure of the Green Start program. Savings from not proceeding with Green Start Round 2 of \$129 million over three years will be reallocated to provide funding for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floods.</p>						
Building Better Regional Cities- redirection	0	30	35	35	0	100
<p>The Building Better Regional Cities program provides funding to participating councils across Australia to invest in local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support new housing developments. This measure will redirect \$100 million of funding to re-building infrastructure in flood affected council areas, including those not originally targeted by the initiative.</p>						
Liquefied Petroleum Gas (LPG) Vehicle Scheme - capping annual claims	0	43	26	27	0	96
<p>The Liquefied Petroleum Gas Vehicle (LPG) scheme provides grants for factory conversions and post factory conversions to LPG fuel systems. The Government will cap the Scheme at 25,000 claims per annum for the life of the Scheme from 2011-12. This will provide savings of \$96 million over three years.</p>						
Australian Learning and Teaching Fund - discontinue funding	0	12	24	25	26	88
<p>Funding for the Australian Learning and Teaching Council will be discontinued from 1 January 2012, providing savings of \$88 million over four years. The Government remains committed to continu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Australia, and is establishing new quality and regulatory arrangements for higher education through: a new national regulatory and quality agency, the 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a new National Register of Higher Education Providers; a new Higher Education Standards Framework; and the My University website.</p>						
Solar Homes and Communities Plan	85	0	0	0	0	85
<p>The Solar Homes and Communities Plan (SHCP) provided rebates of up to \$8,000 for the installation of solar photovoltaic systems. The program ended in June 2009 and residual rebates are still being processed. The Government will cap the amount remaining available for outstanding claims, allowing \$85 million to be redirected to the flood recovery effort.</p>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0	60	35	-20	-20	55
<p>The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was established to connect parties around the world to address issues and learn from each other to accelerate the deployment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s. The Government will reduce funding for the Institute by a total of \$55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with \$5 million of this contribution to the Institute to be rephased to beyond the forward estimate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contribute \$100 million to the Institute over the forward estimates period.</p>						
O-Bahn City Access	27	29	0	0	0	56
<p>The Australian Government will withdraw its funding to the O-Bahn City Access project in Adelaide. This is the result of a significant scope reduction of the original project, resulting in only limited transport benefits. The project will not proceed at this point in time.</p>						
Rephasing Infrastructure Projects - Queensland	6	71	136	255	-142	325
Rephasing Infrastructure Projects - Other	*	*	*	*	*	675
Total						5,641

Full details will be published in the 2011-12 Budget.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Secure and Sustainable Pensions) 지급을 위해 연금개혁안 발표(FY2009-10 예산안)

-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증가에 대비하여 노령연금(Age pension) 수령연령을 상향 조정
 - 2017년 7월 1일부터 연금수령연령이 65세에서 65.5세로 상향 조정
 - 이후 2년마다 수령연령이 6개월씩 늘어나 2023년 7월 1일에는 67세에 도달
- 연금 소득심사(income test)에 적용되는 누진율 변경
 - '09. 9. 20일부터 소득심사에 적용되는 누진율을 40센트에서 50센트로 인상
 - 소득심사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독신의 경우 초과 소득 1호주달러당 연금지급금이 50센트씩, 부부의 경우 각각 25센트씩 감소(단, 연금 전액 수혜자는 해당사항 없음)
 - 소득심사 개정으로 인해 향후 4년간 12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
- 330만명의 연금수혜자(노령연금, 장애인지원연금, 미망인연금 등)들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지급금 인상조치
 - '09. 9. 20일부터 독신을 위한 최대 연금요율을 2주 기준 65호주달러로 인상
 - 이는 기존 기초연금 인상분 60호주달러에 새로운 연금보조금 5호주달러를 추가한 형태임
 - 부부를 위한 최대 연금요율은 2주 기준으로 20.3호주달러 인상
 - 부분요율 적용 대상 독신인 경우 2주 기준 최소 20.2호주달러의 부분적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
- 연금수혜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간소화
 - '09. 9. 20일부터 현재 연금과 더불어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allowance)과 새로 지급되는 연금보조금을 통합하여 연금보충금(Pension Supplement)¹⁴⁾ 형태로 지급

14) 연금보충금이란 일상 가계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령연금수령자로 소득지원지급금을 받고

-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 상한 조정 및 개인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축소 (FY2009-10 예산안)
 -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추가적립(concessional superannuation contributions)의 상한 조정
 - (현행) 연간 5만호주달러까지 퇴직연금 추가적립분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50세 이상인 자는 연간 10만호주달러임)
 - (개정) FY2009-10부터 추가적립 상한을 2만 5천호주달러로 하향조정(50세 이상인 자는 연간 5만호주달러임)
 - 동 개정으로 인해 향후 4년간 28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
 - 개인이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FY2013-14까지 한시적으로 축소
 - 현재 개인이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은 150%이나 FY2009-10~FY2011-2012까지는 100%, FY2012-13~FY2013-14까지는 125%로 축소 지원한 뒤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 150%로 지원
 - 이와 같은 한시적 조치로 인해 향후 4년간 14억호주달러의 예산 절감

있거나 사별수당(Bereavement Allowance), 간호인 지급금(Carer Payment), 미망인B연금(Widow B Pension), 아내연금(Wife Pension), 장애인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화 및 용역세 보충금(Good and Service Tax Supplement), 공공요금 수당(Utilities Allowance), 전화비 수당(Telephone Allowance), 의약품비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